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등 기 특 별 회 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결산 개요	1
1. 세입세출결산	1
(1) 세입결산	1
(가) 총 괄	1
(나) 일반회계	2
(다) 등기특별회계	3
(2) 세출결산	4
(가) 총 괄	4
(나) 일반회계	5
(다) 등기특별회계	6
(라) 프로그램별 명세	7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10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10
2. 수입지출결산	11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
(가) 수입결산	11
(나) 지출결산	12
(2) 국유재산관리기금	13
3. 재무제표	15
II. 검토의견	17
1. 총 괄	17
(1) 사업 간 구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재배정 관행 해소 필요	17
(2) 사법정책연구원 소관 예산 별도 편성 및 집행 필요	25
(3) 복리후생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 및 집행 필요	29
(4) 자체 회계감사 결과 등 공개 방안 마련 필요	33

2. 일반회계	35
《세 출》	35
(1) 가족관계등록사무	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5
(나) 워크숍 예산 연례적 초과집행 부적정, 비목에 맞는 집행 및 전용절차 준수 필요	36
(2)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0
(나) 장단기 해외연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40
(3)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4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6
(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46
(4) 사법정책연구개선	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3
(나) 정책연구용역 연례적 이월 부적정	53
(5) 법원시설관리 등	5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9
(나) 노후 시설 및 비품의 적절한 교체 필요	60
(6) 정보화사업 총괄	6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3
(나)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최소화 필요	64
(7) 사법업무 전산화	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7
(나)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 필요	68
(8)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7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5
(나) 과업변경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76
(9) 도서관 운영지원	8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0
(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80

(10) 연수원 운영지원	8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5
(나)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85
3. 등기특별회계	89
《세 입》	89
(1) 기타재산이자수입	8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9
(나)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 납부금을 반영하여 예산과 수납액의 불일치 해소 필요	89
《세 출》	95
(2) 등기소 신증축	9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5
(나)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95
(다)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절차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98
(3) 등기업무 전산화	1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7
(나) 계약사무의 전문성 증진 필요	107
(4) 등기업무 운영지원	1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3
(나) 예산 이·전용 및 세목조정 활용시 정확한 추계 필요	113
(5) 일반회계 전출	1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8
(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확대 필요	118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22
《총괄》	122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122
《수입》	127
(2) 민간출연금	1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7
(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에 있어 공개경쟁 방식 확대 및 심사·평가기준 변경 필요	127
《지출》	136
(3) 소년보호 등 지원	1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6
(나)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 률 저조 개선 필요	137
(4) 사법서비스 향상	14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1
(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142
(다) 국민참여재판운영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150
(라)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개선 필요	152

【참고자료】

1. 법원 조직도	156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157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159
4.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및 조치 현황	160
5.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161

I. 결산 개요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조 1,685억 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31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26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64.4%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인 205억 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7.3%에 달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2022년	789,450	724,905	723,403	—	1,501	91.6
2023년	1,168,554	773,190	752,602	—	20,588	64.4
증 감 률	48.0	6.7	4.0	—	1,271.6	△29.7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382억 9,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30억 800만원으로 그 차액은 2,852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1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61.2%임. 미수납액 15억 800만원은 주로 징계부과금 및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자력, 납기미도래 등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738,291	453,008	451,500	—	1,508	61.2%
관유물대여료	3,977	2,922	2,920	—	2	73.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	52	50	—	2	119.0%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	1,126	66	—	1,060	62.9%
변상금및위약금	247	477	50	—	428	20.2%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10,390	111,466	111,450	—	16	101.0%
면허료및수수료	453,166	325,287	325,287	—	—	71.9%
잡수입	153	497	497	—	—	324.8%
고정자산매각대	—	5	5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
전입금	170,211	11,176	11,176	—	—	6.6%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302억 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01억 8,2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100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1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70.0%임. 미수납액 190억 8,000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은평등기소 토지매각대금 중 분납 잔금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430,263	320,182	301,102	—	19,080	70.0%
관유물대여료	292	346	277	—	69	94.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5	660	659	—	1	425.2%
변상금및위약금	—	225	22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1	1	—	—	5.0%
면허료및수수료	352,003	222,011	222,011	—	—	63.1%
잡수입	7	19,013	3	—	19,010	42.9%
고정자산매각대	1,406	79	79	—	—	5.6%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553	9,797	9,797	—	—	92.8%
세계잉여금이입액	65,827	68,050	68,050	—	—	103.4%

(2) 세출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2,190억 2,000만원 중 91.4%인 2조 27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9%인 196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8%인 1,72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2년	2,018,077	2,042,689	1,954,788	96.9	95.7	12,959	74,942
2023년	2,206,061	2,219,020	2,027,203	91.9	91.4	19,697	172,120
증 감 률	9.3	8.6	3.7	—	—	52.0	129.7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7,856억 7,900만원 중 98.7%인 1조 7,62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인 17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54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2년	1,712,674	1,729,428	1,705,532	99.6	98.6	9,881	14,015
2023년	1,775,798	1,785,679	1,762,999	99.3	98.7	17,198	5,481
증 감 률	3.7	3.3	3.4	—	—	74.1	△60.9

- 2023년도 대법원 일반회계의 지출률(98.7%)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9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도 전체 일반회계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일반회계	446,242,183	449,067,227	405,886,279	91.0	90.4	2,005,606	41,175,324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1,775,798	1,785,679	1,762,999	99.3	98.7	17,198	5,481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33억 4,100만원 중 61.0%인 2,64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6%인 24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5%인 1,666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2년	305,403	313,261	249,256	81.6	79.6	3,078	60,927
2023년	430,263	433,341	264,203	61.4	61.0	2,499	166,639
증 감 률	40.9	38.3	6.0	-	-	△18.8	173.5

- 2023년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의 지출률(61.0%)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평균인 93.0%보다 낮은 수준임.

<2023년도 전체 특별회계와 등기특별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특별회계	86,393,335	89,548,885	83,267,420	96.4	93.0	1,844,729	4,436,730
등기 특별회계	430,263	433,341	264,203	61.4	61.0	2,499	166,639

(라) 프로그램별 명세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775,798	1,785,679	1,762,999	99.3%	98.7%	17,198	5,481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4,580	14,580	14,528	99.6%	99.6%	—	52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8,142	7,934	7,626	93.7%	96.1%	—	308
사법행정효율성증진	11,203	11,721	11,617	103.7%	99.1%	84	20
재판청구권 실현	145,154	146,890	145,137	99.9%	98.8%	1,005	747
재판절차비용지원	36,828	36,981	36,131	98.1%	97.7%	418	432
재판일반경비지원	40,376	41,554	41,277	102.2%	99.3%	86	191
사법정책연구개선	2,621	3,020	2,444	93.2%	80.9%	501	75
국선번호료지원	65,329	65,334	65,285	99.9%	99.9%	—	49
전문재판운영	3,884	3,854	3,751	96.6%	97.3%	22	80
법원예비금	280	280	—	—	—	—	280
법원시설관리 등	45,831	41,758	38,905	84.9%	93.2%	2,707	146
사법업무 전산화	76,044	81,198	66,868	87.9%	82.4%	13,339	992
사법업무 전산화	45,250	45,131	42,886	94.8%	95.0%	1,596	649
전자소송	8,504	7,854	7,793	91.6%	99.2%	—	6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8,461	24,384	14,802	80.2%	60.7%	9,354	229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3,829	3,829	1,387	36.2%	36.2%	2,389	53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767	17,356	16,774	94.4%	96.6%%	—	582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332	2,673	2,673	114.6%	100%	—	—
일반 인건비	1,228,315	1,237,576	1,237,214	100.7%	99.9%	—	362
소속기관 인건비	20,633	20,315	20,185	97.8%	99.4%	—	130
도서관 인건비	6,327	6,192	6,113	96.6%	98.7%	—	79
연수원 인건비	8,082	8,217	8,183	101.2%	99.6%	—	34
교육원 인건비	6,224	5,906	5,889	94.6%	99.7%	—	17
본부 기본경비	77,361	77,817	77,342	99.9%	99.4%	39	436
소속기관 기본경비	5,156	5,167	5,134	99.6%	99.4%	—	33
도서관 기본경비	804	794	787	97.9%	99.1%	—	7
연수원 기본경비	2,691	2,669	2,661	98.9%	99.7%	—	8
교육원 기본경비	1,661	1,704	1,686	101.5%	98.9%	—	18
사법운영지원	119,116	116,561	115,244	96.7%	98.9%	2	1,314
본부운영지원	106,116	103,496	102,229	96.3%	98.8%	2	1,264
도서관운영지원	2,732	2,578	2,577	94.3%	99.9%	—	1
연수원운영지원	6,460	6,551	6,511	100.8%	99.4%	—	40
교육원운영지원	3,808	3,936	3,927	103.1%	99.8%	—	9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30,263	433,341	264,203	61.4%	61.0%	2,498	166,637
등기소 신증축	17,382	17,670	15,227	87.6%	86.2%	2,404	39
등기업무전산화	60,798	60,729	59,898	98.5%	98.6%	47	783
등기업무전산화	41,532	40,869	40,407	97.3%	98.9%	—	462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1,904	1,914	1,913	100.5%	99.9%	—	1
미래등기시스템구축	17,362	17,946	17,578	101.2%	97.9%	47	321
등특 인건비	126,145	127,022	126,864	100.6%	99.9%	—	157
등특 기본경비	5,058	4,930	4,879	96.5%	99.0%	—	51
등기업무 운영지원	28,025	30,135	29,640	105.8%	98.4%	47	447
등기업무 운영지원	23,986	26,096	25,816	107.6%	98.9%	47	232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039	4,039	3,824	94.7%	94.7%	—	215
예비비	200	200	—	—	—	—	200
일반회계 전출	170,211	170,211	11,176	6.6%	6.6%	—	159,035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22,444	22,444	16,519	73.6%	73.6%	—	5,925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3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비금을 전액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 월 액	불 용 액
2022년	280	280	—	—	—	—	280
2023년	280	280	—	—	—	—	280
증 감 률	—	—	—	—	—	—	—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3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 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2년	200	200	—	—	—	—	200
2023년	200	200	—	—	—	—	200
증 감 률	—	—	—	—	—	—	—

2. 수입지출결산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액은 1,992억 8,5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384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68억 8,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액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199,285	138,481	136,889	—	1,587	68.7
기타재산수입	—	2	2	—	—	—
변상금	—	1,890	300	5	1,585	—
위약금	—	1	—	—	1	—
가산금	—	—	—	—	—	—
민간출연금	90,636	100,894	100,894	—	—	111.3
기타경상이전	270	537	537	—	—	198.9
기타잡수입	—	—	—	—	—	—
여유자금회수	77,287	3,920	3,920	—	—	5.1
예탁원금회수	30,000	30,000	30,000	—	—	100.0
예탁이자수입	1,092	1,236	1,236	—	—	113.2

(나) 지출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액은 1,992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68억 8,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지출액 (B)	계획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9,285	136,889	68.7	2,872	4,094
소송구조지원	5,930	5,905	99.6	—	25
조정제도지원	12,823	11,433	89.2	—	1,390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	3,006	3,006	100.0	—	—
소년보호 등 지원	6,367	5,074	79.7	—	1,293
민원서비스 개선	24,773	23,299	94.0	855	664
사법서비스향상	12,832	12,287	95.8	24	553
기금관리비	41	27	65.9	16	14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6,316	6,063	96.0	1,977	78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3,156	3,079	97.6	—	7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00	30,000	100.0	—	—
여유자금운용	94,041	36,715	39.0	—	—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대법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었던 법원시설 확충사업이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장관 총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대법원 관련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3년도 계획현액 1,331억 2,000만원 중 85.4%인 1,136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공용재산취득사업(대법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¹⁾.

1)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대법원 관련 주요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액 (A)	지출액 (B)	계획현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1300 공용재산취득 (대법원)	99,900	119,880	13,240	133,120	113,678	85.4	18,616	826
1331 청사	99,900	119,880	13,240	133,120	113,678	85.4	18,616	826
춘천지법 속초지원 신축	9,155	8,967	525	9,492	9,471	99.8	—	21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845	—	—	—	—	—	—	—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21,050	21,050	—	21,050	20,100	95.5	950	—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신축	12,981	14,377	4,953	19,330	18,940	98.0	—	390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7,277	2,852	695	3,547	2,647	74.6	856	44
수원법원 위탁개발	9,890	41,971	—	41,971	41,971	100.0	—	—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2,882	2,032	—	2,032	1,629	80.2	403	—
창원가정법원 신축	927	3	367	370	18	4.9	3	349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278	—	—	—	—	—	—	—
청사시설 취득	33,615	28,628	6,700	35,328	18,902	53.5	16,404	22

3.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 제5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하나로서 국회에 제출됨.

2023회계연도 말 대법원 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조 8,158억 4,400만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9.9% 감소한 550억 400만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조 7,608억 3,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한 4,763억 7,500만원임.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1조 8,271억 2,100만원과 비배분비용 17억 3,4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6,017억 7,7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조 7,034억 5,300만원임.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1,013억 9,0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6,020억 6,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법원의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8조 5,776억 5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1조 6,020억 6,2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7,676억 4,200만원,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114.2% 증가한 176억 5,400만원임. 기초순자산,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의 합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한 기말순자산은 8조 7,608억 3,900만원임.

〈대법원 소관 회계 재무제표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현황	
				(A-B)	증감률(%)
재정상태표	자 산	8,815,844	8,638,630	177,214	2.1%
	부 채	55,004	61,025	△6,021	△9.9%
	순자산	8,760,839	8,577,605	183,234	2.1%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76,375	534,433	△58,058	△10.9%
	재정운영순원가	1,703,453	1,778,528	△75,075	△4.2%
	재정운영결과	1,602,062	1,702,530	△100,468	△5.9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8,577,605	8,690,268	△112,663	△1.3%
	재정운영결과	1,602,062	1,702,530	△89,314	△5.9%
	재원 조달 및 이전	1,767,642	1,714,289	53,353	3.1%
	조정항목	17,654	△124,422	142,076	114.2%
	기말순자산	8,760,839	8,577,605	172,081	2.1%

※ 각 항목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및 기금의 합계액임.

II. 검토의견

1. 총 괄

(1) 사업 간 구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재배정 관행 해소 필요

- 최근 몇 년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비용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하거나, 같은 세부사업을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집행하거나,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회계가 서로 다른 사업을 혼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대법원이 등기특별회계 소관 사업에서 등기업무와 무관한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의결공익사업들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 수당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한 것과 도시가스료를 여러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음.

<예산의 사업 간 혼용 집행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4) 등특 예산으로 법원사용자지원센터 등 공사비 집행 부적절	○ [지적사항]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 (420-03) 중 일부를 법원 일반 업무에 대한 상담센터인 법원사용자지원센터와 법원 직원들의 숙소인 관악재 건물에 대한 보수비로 지출하였음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용자지원센터, 관악재 등 등기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비용 지출에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17) 의결공익사업 사업목적 명확화 및 재정운용방식 체계화 필요	○ [지적사항]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결공익사업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운영경비’와 같이 공익사업 목적이란기보다는 일반회계 관련 기본경비 사업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기본경비성 지출이 상당수 발견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6)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 사업에서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2021년도에는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열요금, 승강기무선통신사용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본부 운영지원 (7031-303)’,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등 5개 세부사업에서 16억 원을 집행하였음 ○ 2020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전산정보센터 관련 공공요금을 여러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바 있음 ○ 필요에 따라 여러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이라 할 것임	주의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및 ‘법정중심 재판운용(1143-403)’ 등 4개 사업에서 분담하던 공공요금 예산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관하여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단일하게 편성할 것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3)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회계 담당 직원에게 대한 회계 교육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0년에 <u>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서로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사업과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에서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함</u>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예산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주의
(8)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 기본경비 총괄 편성 필요	○ [지적사항] 대법원은 도시가스료 2억 3,71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본부 운영지원’ 사업, ‘법정중심재판운영’ 사업,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서 각각 나누어 집행하는 등 공공요금 집행 시 세부사업간 예산을 혼용하고, 유류비 4,010만원을 도시가스료로 지출하는 등 유류비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였음. ○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은 기본경비에서 총괄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적합하고, 유류비로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은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부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기본경비 사업에 총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안정보시스템, 예결위 심사보고서)

- 우리나라의 예산은 회계별, 중앙관서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편성되고 있음. 세출예산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상하계층 구조로 편성되는 한편, 성질을 중심으로 목과 세목으로 다시 구분됨.

〈프로그램 예산 구조(2024년 기준)〉

분류 구분	분류 중 구분	분류항목 수
소관별(중앙관서별)	소관	60개
회계별	회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0개
	기금	기금 67개
기능별	분야	16개
	부문	74개
	프로그램	652개
	단위사업	2,768개
	세부사업	8,400개
성질별	지출목	27개
	지출세목	114개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재정연구분석 >> 재정사업 >> 프로그램 예산제도 소개

- 국가예산을 이와 같이 사업별, 성질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각 중앙관서(국가예산의 소관별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포함)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 및 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는 사업목적, 수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각 세부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대법원 소관 예산의 경우, 각 세부사업이 사업목적과 사업수행 주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같은 세부사업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혼용하고 집행하거나, 동일한 비용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됨.
- 또한,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대법원 산하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와 별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기본경비(7011-250)나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을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본부 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 예산이 법원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으로 재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요원 보수 예산 등과 같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체 사회복지요원 보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다시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소관 기본경비 등에 편성된 사법행정활동비, 과운영비 또는 공기청정기 등 집기 구입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본부 기본경비 등에서 해당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예산 법원공무원교육원 재배정 사례〉

(단위: 원)

일자	세부사업	세목	증(감)배정액	사유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1/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1-1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8,780,000	각급법원 1/4분기 사법행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46,56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 재배정(연액)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국내여비 (220-01목)	3,24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피복비 (210-03목)	1,654,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급식비 (210-04목)	8,40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2-0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	4,435,000	법원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용역비 (210-14목)	4,146,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2,640,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피복비 (210-03목)	1,750,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3-03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2/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3-0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9,260,000	각급법원 2/4분기 사법행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3-0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기타운영비 (210-16목)	3,600	각급법원 과운영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3-06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기타운영비 (210-16목)	3,596,400	각급법원 과운영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3-07	본부운영지원 (7031-303)	자산취득비 (430-01목)	2,667,000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 예산 재배정

일자	세부사업	세목	증(감)배정액	사유
2023-04-04	본부 기본경비 (7011-250)	복리후생비 (210-12목)	2,010,000	동호회 활동지원금
2023-04-06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500,000	교육원 사법행정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4-06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27,000	교육원 사법행정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6-2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3/4분기 재판지 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6-2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20,520,000	각급법원 3/4분기 사법행 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7-0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목)	3,825,000	2023년 상반기 근무지 변 경에 따른 이전비 예산 재 배정
2023-09-06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300,000	각급 법원 사회복지요원 보 수 예산 감배정
2023-09-26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4/4분기 재판지 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10-1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450,000	각급법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비 예산 재배 정
2023-11-02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5,000	각급 법원 사회복지요원 보 수 예산 감배정
2023-11-2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목)	250,000	2023년 하반기 근무지 변 경에 따른 이전비 예산 재 배정
2023-12-1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500,000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능력 개발비 예산 재배정
2023-12-2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포상금 (310-03목)	300,000	각급법원 우수공무원 포상 금 예산 재배정
2023-12-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94,000	사회복지요원 기금예산 감 배정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기본경비 관련 예산이 편성된 교육원 기본경비(7011-291)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을 조정 한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부 기본경비(7011-250) 등의 사업 예산을 일부를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직접 재배정하여 해당 세부사업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예산의 재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이나 전용 등의 예산조정절차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 소관 예산이 사업 수행 주체별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얼마만큼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대법원의 경우 조직과 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산구조는 이에 걸맞게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프로그램 예산 구조의 취지에 맞게 사업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이·전용 등 예산 조정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산의 재배정 관행은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사법정책연구원 소관 예산 별도 편성 및 집행 필요

-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5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 이 중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3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 1일 설립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과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고(「법원조직법」 제76조의2제1항),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76조의8),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법정책연구원의 인원은 정무직(원장) 1명, 법관 12명, 일반직 34명, 임기제 13명 등을 합하여 총 60명임.

〈사법정책연구원 인원구성〉

(2022. 12. 31.)

구분	정무직	경력직											전문 임기제	일반 임기제	계
		법관				일반직									
		고법 부장	지법 부장	고법 판사	판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원장실	1														1
연구원실		1	3		8		2	3					9	3	29
사무국						2									2
총무과							1		1	7	3	4	1		17
연구지원과								1	3	4	2	1			11
계	1	1	3		8	2	3	4	4	11	5	5	10	3	60

자료: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p.362

〈2023회계연도 사법정책연구원 소관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예산 배정액	집행액
계		6,462,026,190	6,459,220,78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915,000	915,000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2,308,000	2,308,000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116,636,620	116,403,110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564,391,000	564,391,000
	전문재판운영(1144-407)	11,016,000	11,016,000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49,490,000	49,489,900
	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1331-300)	2,880,000	2,880,000
	일반 인건비(7001-151)	5,265,201,110	5,265,197,610
	본부 기본경비(7011-250)	414,445,460	414,359,180
	본부운영지원(7011-303)	32,435,000	29,952,98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2,308,000	2,308,000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2023회계연도에 사법정책연구원에 배정된 예산은 일반 인건비(7001-151) 52억 6,500만원,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5억 6,400만원, 본부 기본경비(7011-250) 4억 1,4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64억 6,203만원이며, 이 중 64억 5,922만원이 집행되었음.
-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 대법원 산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의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관 세부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2023회계연도 사법행정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모두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지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사법정책연구원은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지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지 않음.

- 각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각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세부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각 소속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준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등 소관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사법행정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일반 회계	[7000] 사법행정운영지원			1,386,943	1,450,581	1,455,119	1,520,040
		[7001] 본부 인건비		1,184,406	1,228,315	1,237,214	1,288,541
			[151] 일반 인건비	1,184,406	1,228,315	1,237,214	1,288,541
		[7002] 소속기관 인건비		19,501	20,633	20,185	22,702
			[171] 도서관 인건비	5,711	6,327	6,113	6,712
			[181] 연수원 인건비	7,786	8,082	8,183	9,019
			[191] 교육원 인건비	6,004	6,224	5,889	6,971
		[7011] 사법운영 기본경비		76,548	82,517	82,477	84,834
			[250] 본부 기본경비	71,948	77,361	77,342	80,254
			[271] 도서관 기본경비	792	804	787	795
			[281] 연수원 기본경비	2,482	2,691	2,661	2,170
			[291] 교육원 기본경비	1,326	1,661	1,686	1,615
		[7031] 사법운영지원		106,488	119,116	115,244	123,963
			[303] 본부 운영지원	95,408	106,116	102,229	109,178
			[307] 도서관 운영지원	2,472	2,732.	2,577	2,825
			[308] 연수원 운영지원	5,400	6,460	6,511	8,003
			[309] 교육원 운영지원	3,208	3,808	3,927	3,957

* 일반회계 소관, 등기특별회계 제외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3) 복리후생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 및 집행 필요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에 사용하여야 함.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대법원의 복리후생비(210-12목)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210-12목)를 이와 같은 경비 외에 직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체육행사 등에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직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예산을 다른 세목이 아니라 복리후생비(210-12목)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복리후생비를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에 집행한 사례〉

(단위: 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집행 건명	지출금액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대법원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 체육행사 지원비(2023년 총 배정액)	271,365,0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도 전국법원 회계직 담당자(8, 9급) 연수 관련 비용	9,291,5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 전국법원 총무(사무)과장 워크숍 관련 비용	11,784,0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 상반기 재판연구관 워크숍 비용	12,272,000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023년 재판연구관 워크숍 비용 등(상사조 외 4건)	6,857,20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2023년 가사조사관 워크숍 비용	11,783,6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중 일부 발췌

〈워크숍, 세미나 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사례〉

(단위: 천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금액
일반회계	연수원 운영지원 (7031-308)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법학전문대학원 과의 정기세미나 등)	9,000
		신규입용법관 역량개발 워크숍(심리상담 등)	23,000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30,000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15,000
일반회계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76,00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소년·아동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9,00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통역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및 간담회 지원	45,000

자료: 대법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중 일부 발췌

- 체육행사나 직원 워크숍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상에 명시된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의 경우 체육행사,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는 국내여비(220-01목)나 일반수용비(210-01목),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²⁾ 등의 세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법원의 경우 이와 같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행사를 복리후생비(210-12목)로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에서는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되는 복리후생비(210-12목)가 국선변호료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일반 사업에도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등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복리후생비가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210-12목)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회계연도 복리후생비(210-12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9,175	-	△97	19,630	19,466	-	162
일반 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371	-	△1	370	369	-	2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1,269	-	△1	1,268	1,266	-	2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403	-	△1	402	395	-	7
	국선번호료지원 (1143-409)	76	-	-	76	72	-	4
	전문재판운영 (1144-407)	1,217	-	△3	1,214	1,199	-	14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332-303)	5	-	△4	1	1	-	-
	본부 기본경비 (7011-250)	13,286	-	△33	13,253	13,159	-	94
	도서관 기본경비 (7018-271)	78	-	6	84	83	-	1
	연수원 기본경비 (7018-281)	89	-	△24	65	65	-	-
	교육원 기본경비 (7018-291)	44	-	-	44	43	-	-
	본부운영지원 (7031-303)	675	-	-	675	663	-	12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63	-	△11	52	52	-	-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2	-	-	12	12	-	-
등기 특별 회계	등특 기본경비 (7011-271)	1,803	-	△13	1,790	1,774	-	15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75	-	-	75	75	-	-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	조정제도 지원 (1161-302)	14	-	-	14	13	-	1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29	-	-	29	29	-	-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105	-	-	105	96	-	9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101	-	-	101	100	-	1

자료: 대법원 제출

(4) 자체 회계감사 결과 등 공개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법원의 감사(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법원감사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 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연 1회 법원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회계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의 경우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등 총 50개 기관에 대하여 회계분야별로 각각 282건 및 575건의 지도를, 2023회계연도의 경우 총 51개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 유형별로 총 176건의 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021~2023회계연도 자체 정기회계감사 실시 현황〉

회계연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결과	
			지도 건수	조치현황
2021	대법원 소속기관 5개 ¹⁾ , 각 고등법원 등 35개, 사무국 설치 지원 10개 (총 50개)	2021.04.05.~ 2021.11.30.	회계분야별 ²⁾ 지도 282건	완료
2022		2022.03.10.~ 2022.11.18.	회계분야별 지도 575건	완료
2023	대법원 소속기관 5개, 각 고등법원 등 35개, 사무국 설치 지원 11개 ⁴⁾ (총 51개)	2022.03.02.~ 2023.09.22.	처리결과 유형별 ³⁾ 지도 176건	완료

1)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회계분야별: 집행, 지출원인행위, 계약, 지출, 관서운영경비, 수당 등

3) 처리결과 유형별: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
- 법원감사규칙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른 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분화

4) 남양주지원 추가

자료: 대법원 제출

○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³⁾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자체감사 결과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

국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나,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⁴⁾)를 통해 예산집행사무점검 결과보고서, 인사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도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사법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감사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주제별 공개>>행정>>감사>>정기감사 결과보고서

2. 일반회계

《세 출》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는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14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145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5,200만원 불용되었음.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내역사업인 제도교육 경비 등 사업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워크숍 행사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2억 100만원 가운데 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관계등록사무	14,580	-	-	14,580	14,528	-	52
제도교육 경비 등	201	-	-	201	186	-	15

(나) 워크숍 예산 연례적 초과집행 부적정, 비목에 맞는 집행 및 전용절차 준수 필요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비목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임차료가 초과 집행되고 있음. 대법원은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임차료 비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으로 3,500만원을 보충하여 4,700만원 집행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년 시(구)·읍·면의 공무원 제도개선 워크숍 항목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시 국내여비 항목에서 증액 요청하고 있으나 확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 비목으로 부족한 워크숍 숙박료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워크숍 비용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가족관계등록사무	14,580	—	—	14,580	14,528	—	52	14,448
일반수용비(210-01)	183	—	△35	148	123		25	84
임차료(210-07)	12	—	35	47	47	—	—	12
국내여비(220-01)	129	—	—	129	127	—	2	129

자료: 대법원

- 코로나19로 직원 워크숍을 수행하지 않았던 해를 제외하고, 2019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형식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임차료 초과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사무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	임차료	14	—	33	—	47	47	—	—
2020	임차료	14	—	—	—	14	—	—	14
2021	임차료	14	—	—	—	14	—	—	14
2022	임차료	12	—	△12	—	—	—	—	—
2023	임차료	12	—	35	—	47	47	—	—

* 2020년 ~ 2022년은 코로나19로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아 임차료 미집행
자료: 대법원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임차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워크숍	객실 사용료	회의장 임차료
1	법원행정처 주관 전라지역 가족관계 등록관서장 워크숍(4.6.~4.7.)	4,865	1,800
2	법원행정처 주관 감독법원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9.14.~9.15.)	6,450	1,800
3	서울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워크숍(4.27.~4.28.)	5,768	640
4	수원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2,160	1,000
5	대구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6.8.~6.9.)	5,175	1,000
6	부산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5,108	1,000
7	광주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4,800	1,000
8	전주지방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6.15.~6.16.)	3,280	750
합계		37,606	8,990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구성

- 한편, 2023년 임차료 예산현액 4,7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약 3,760만원은 호텔 객실 숙박료로 사용하였고, 약 900만원은 회의장 임차료로 사용함.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따르면⁵⁾, 임차료 비목의 적용 대상은 ① 청사임차, ② 차량임차, ③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④ 토지 및 장비 임차, ⑤ 재외공관 임차 등 주로 업무 목적 장소 대여를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직원 워크숍을 위한 호텔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또한 만약 대법원이 워크숍 숙박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었다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210-01)에서 국내여비(220-01)로 ‘전용’했어야 함. 세목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내부지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반면, 예산의 전용은 각 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집행 및 후속조치를 요함⁶⁾.

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264

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법원이 임의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를 국내여비가 아니라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하게 되면 법률이 규정한 전용절차를 회피하게 되어, 예산에 대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세목조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국내여비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가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와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81억 4,200만원,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79억 3,400만원이며, 이 중 76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8,142	—	△208	7,934	7,626	—	308

(나) 장단기 해외연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에 5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억 1,800만원이 이용 및 세목조정되었고, 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42	—	△208	7,934	7,626	—	308
장단기 해외연수	5,514	—	△218	5,296	5,172	—	124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	—	168	124	—	44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	—	209	154	—	55
연임법관 연수	1,406	—	—	1,406	1,406	—	—
국제회의 참가 등	438	—	—	438	394	—	44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200	—	9	209	168	—	41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80	—	—	80	80	—	—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및 재외 한인법조인 초청	128	—	—	128	128	—	—
□ 세목별 분류(합계)	8,142	—	△208	7,934	7,626	—	308
일반수용비(210-01목)	1,984	—	△218	1,767	1,612	—	155
임차료(210-07목)	37	—	9	46	45	—	1
일반용역비(210-14목)	30	—	—	30	30	—	—
국외업무여비(220-02목)	943	—	—	943	804	—	139
국외교육여비(220-03목)	5,139	—	—	5,139	5,126	—	14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9	—	—	9	9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구체적인 이용 및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인건비(7001-151)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각각 1억 6,800만원과 4,0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이 이용되었고,
그 외 임차료 부족으로 900만원이 세목조정되었음.

〈2023년도 이용·세목조정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승인이용)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168	일반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인건비)	본부 인건비 부족
이용 (자체이용)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4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본부 공공요금 부족
세목조정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9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7 (임차료)	임차료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또한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 취지⁷⁾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일부 지출도 확인되는데, 6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나
(4,500만원), 온라인 강의인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 참가
(23. 12. 26., 1,400만원) 등의 내역도 확인됨⁸⁾.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은 차년도인 2024. 1. 8.부터 1. 26.

7)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
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구분하여 시행(자료: 대법원 제출)

8) 구성원의 어학연수나 단기 위탁교육 등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2023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 편성)'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까지의 일정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임.

〈2023년도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 집행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12. 12.	일반수용비 (210-01목)	45,123,500원	국내 어학연수비
2023. 12. 26.	일반수용비 (210-01목)	14,045,400원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코스 참가

자료: 대법원 제출

〈어학연수 지출 관련 세부 내역〉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1	대전지법	판사	미국 (골든게이트)	JC Education	방문	\$5,400	₩7,054,560
2	서울행정	판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Fokus Sprachen Seminare (2023.9.19.~20 23.10.) Language Training for Global Communication (LTGC) (2023.11.~2024 .1.31.)	연구	€ 1,161	₩1,645,845
3	남양주지원	판사	미국 (UC데이비스)	인터네셔널 하우스 (I-HOUSE) 비영리단체	연구	\$120	₩156,768
4	의정부지법	판사	오스트리아 (빈)	ALEKSANDRA COSIC STUDY POINT	연구	€ 1,800	₩2,551,698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5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Alliance français a strasbourg(6개 월 과정, 2023.10. ~ 2024.3.)	연구	€ 1,123.4	₩1,592,543
6	울산지법	판사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대 학 WELCOME CENTRE Heidelberger Pädagogium	연구	€ 690	₩978,151
7	서울중앙	판사	독일 (베를린자유)	Sprachenfreund e	연구	€ 558	₩791,026
8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파리제2)	ACCORD ECOLEDE LANGUES · PAR IS	연구	€ 3,740	₩5,301,861
9	대구지법	판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연구	CAD 3,750	₩3,558,188
10	성남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Internacional de Lenguas de Madrid	연구	€ 5,970	₩8,463,132
11	서울남부	판사	독일 (뮌헨)	Carl Duisberg Centren	연구	€ 2,180	₩3,090,390
12	영덕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ih International House Madrid	연구	€ 4,200	₩5,953,962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	Dinamo Language School	연구	€ 850	₩1,204,969
14	광주고등	판사	일본 (동경대학)	유네스코 일본어 교실	연구	¥31,200	₩270,504
합계(원화환산액)							₩42,613,597

* 2023.11.16. 기준 환율(송금보낼 때): 1\$=1,306.40, 1₩=8.67, 1€=1,417.61, 1CAD=948.85

* 개인이 어학연수기관에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하여 어학연수비 신청. 개인통장으로 입금

자료: 대법원 제출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 개요〉

☐ 일정

– 2024. 1. 8.(월) ~ 1. 26.(금)

☐ 진행 언어

– 영어와 프랑스어

☐ 진행 방식

– 주최 측 제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

☐ 등록비 지원

– 선발된 법관의 온라인 교육 등록비(1인당 450유로) 전액 지원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하거나,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사법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12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117억 2,100만원이며, 이 중 116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 운영’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60	△209	1,995	1,935	84	19
건강지원운영	958	16	△78	896	880	—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7,600	766	—	8,366	7,600	—	—
속기직렬 근무환경 개선	215	—	—	215	215	—	—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86	—	△47	39	39	—	—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200	—	10	210	210	—	—
□ 세목별 분류(합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일반수용비(210-01목)	2,442	76	△226	2,293	2,192	84	17
임차료(210-07목)	98	—	△96	2	2	—	—
복리후생비(210-12목)	371	—	△1	370	369	—	2
기타운영비(210-16목)	—	—	1	1	1	—	—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123	—	—	123	123	—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7,400	—	—	7,400	7,400	—	—
공사비(420-03목)	250	545	—	795	795	—	—
감리비(420-04목)	—	13	—	13	13	—	—
시설부대비(420-05목)	—	4	—	4	4	—	—
자산취득비(430-01목)	519	204	△2	721	720	—	1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 중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학위과정 위탁교육, 외국어연수,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총 2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억 900만원(9.7%)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1,892	△209	일반인건비(7001-151)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112백만원 승인이용 일반인건비(7001-151) 부족으로 임차료(210-07)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96백만원 승인이용
일반수용비(210-01)	1,552	1,398	△112	
임차료(210-07)	98	2	△96	

자료: 대법원 제출

특히 대법원은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9,800만원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던 임차료가 공연히 편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됨.

- 다음, 내역사업 중 ‘건강지원운영’ 사업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 직원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총 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7,600만원(8.1%)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 ‘건강지원운영’ 사업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건강지원운영	958	895	△78	일반인건비(7001-151)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76백만원 승인이용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산취득비(430-01)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2백만원 자체전용
일반수용비(210-01)	604	543	△76	
공사비(420-03)	250	250	-	
자산취득비(430-01)	104	102	△2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 다음, 내역사업 중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⁹⁾에 의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야간작업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의 의무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에 총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3,900만원(45.3%)만이 집행되고, 미집행된 예산 4,700만원은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9)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학물(가솔린 등 109종, 생략), 나. 금속류(구리 등 20종, 생략), 다. 산 및 알칼리류(무수 초산 등 8종, 생략), 라.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생략),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생략)

2. 분진(7종, 생략)

3. 물리적 인자(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소음작업 등 8종, 생략)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86	39	△47	일반인건비(7001-151)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47백만원 승인이용
일반수용비(210-01)	86	39	△47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서 제출한 동 내역사업의 지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3,9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위 자료와는 달리 특수건강검진에 집행된 금액은 총 4건, 384만원에 불과함.

〈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 집행 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8. 30.	일반수용비(210-01목)	2,997,360원	2023년도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0. 10.	일반수용비(210-01목)	265,040원	2023년도 대법원등기정보센터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1. 21.	일반수용비(210-01목)	447,790원	2023년도 전산정보센터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2. 19.	일반수용비(210-01목)	130,660원	2023년도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주) 대법원 본부 지출대장에 따른 자료로, 그 외 각급 법원의 지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¹⁰⁾.

자료: 대법원 지출대장

10)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세부 지출 내역은 집계 및 취합의 어려움으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총 집행액은 3,900만원(전체의 45.3%)이 맞고, 미집행된 예산 4,700만원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함.

대법원은 실제 집행에 있어 각 내역사업별로 구분 없이 집행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내역사업별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액 규모의 적합성 등이 폭넓게 인정되어 편성에 이른 반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¹¹⁾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각급 법원별 수혜 대상자 파악을 위해 공문 시행 및 취합을 통해 전수조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 바¹²⁾, 이에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학물(가솔린 등 109종, 생략), 나. 금속류(구리 등 20종, 생략), 다. 산 및 알칼리류(무수 초산 등 8종, 생략), 라.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생략),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생략)

2. 분진(7종, 생략)

3. 물리적 인자(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소음작업 등 8종, 생략)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12)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사법부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전담조직이 2023년부터 전국법원 사업장을 점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재설정(확대)하였고, 재설정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범위를 안내함에 따라 2023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24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집행률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신했다는 문제가 있음.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09종
	■ 금속류(구리, 납, 니켈 등)	20종
	■ 산 및 알칼리류(질산, 황산 등)	8종
	■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염소, 오존 등)	14종
	■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류(광물성 오일)	1종
분진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연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7종
물리적 인자	■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합계		181종

* 대법원은 유해인자 중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등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정책연구개선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사업은 체계적인 사법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0억 2,000만원이며, 이 중 24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나) 정책연구용역 연례적 이월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내역사업인 ‘법원정책연구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양형제도 개선지원	1,026	—	△73	953	914	—	38
사법정책연구원운영	438	—	—	438	438	—	—
사법정책연구 관련 외국연구 자료 조사 수집	50	—	—	50	50	—	—
법원정책연구비	990	454	—	1,444	914	494	37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문제연구	117	10	8	135	128	7	—
□ 세목별 분류(합계)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일용임금(110-04목)	36	—	—	36	19	—	17
일반수용비(210-01목)	987	—	△26	960	956	—	4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22	—	△22	—	—	—	—
특근매식비(210-05목)	20	—	—	20	12	—	8
복리후생비(210-12목)	403	—	△1	402	395	—	7
국내여비(220-01목)	32	—	△15	17	17	—	—
국외업무여비(220-02목)	91	—	—	91	91	—	—
정책연구비(260-02목)	1,026	464	—	1,490	952	501	37
고용부담금(320-09목)	4	—	—	4	2	—	2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총 35건의 연구용역 중 23건(65.7%)에 대한 계약기간이 차년도로 이어졌는데, 이와 같은 이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법원정책연구비 사업 정책연구용역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1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	60	60	—	22.10.17.	23.1.2.~23.7.2.
2	윤관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 사업	22	22	—	23.1.16.	23.3.6.~23.8.31.
3	가장납입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2	—	23.4.1.	23.4.4.~23.7.4
4	민법 제367조의 법적 성격 (경매절차매수인에게대항가능유치권성립여부와관련하여)	3	3	—	23.4.1.	23.4.4.~23.5.31.
5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감액함에 있어 사실심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 및 재량 일탈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위약금 및 성공보수를 중심으로-	2	2	—	23.4.7.	23.4.12.~23.5.31.
6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후속과제)	10	10	—	23.3.20.	23.5.18.~23.11.17.
7	임의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 검토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2	2	—	23.5.12.	23.5.18.~23.5.31.
8	프랑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우리나라 도입 가부	2	2	—	23.5.12.	23.5.18.~23.7.31.
9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 여부	2	2	—	23.5.19.	23.5.22.~23.6.30.
10	법관 임용절차에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78	39	39	23.1.16.	23.6.13~24.1.13.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11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67	33	34	23.1.16	23.6.23.~24.3.13.
12	사법부지식정보 공유 복합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	49	49	—	23.3.20.	23.6.23.~23.12.11.
1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6.29.	23.7.5.~23.10.31.
14	유연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5	—	5	23.7.25.	23.7.26.~23.10.31.
15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가 승인한 유연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3	—	3	23.7.25.	23.7.26.~23.11.30.
16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합의)의 적절한 참작방안에 관한 연구	27	13	14	22.12.12.	23.7.31.~24.2.26.
17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49	24	25	23.4.17.	23.8.8.~24.2.7.
18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	28	14	14	22.12.12.	23.8.21.~23.12.21.
19	고가의 유상감자 관련 업무상 배임죄 성부	2	2	—	23.8.14.	23.8.28.~23.10.27.
20	유류분 반환에 있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동일 소송물인지 여부	3	3	—	23.8.22.	23.8.28.~23.10.31.
2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3	—	3	23.8.21.	23.8.28.~23.9.15.
22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및 제70조 제2호 해석론	3	3	—	23.8.27.	23.8.30.~23.10.30.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23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이 이월결손금 관련 조세소송에 미치는 영향 및 이월결손금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9.8.	23.9.12.~24.2.29.
24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9.8.	23.9.12.~24.1.31.
25	이지리드(Easy-Read)판결 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 연구	50	30	20	23.4.17.	23.9.14.~24.3.11.
26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등에 관한 연구	3	—	3	23.9.19.	23.9.26.~23.10.26.
27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0	21	9	23.5.22.	23.11.6.~24.4.6.
28	온라인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기준 연구	30	15	15	23.4.17.	23.10.31.~24.4.30.
29	사법정책연구원 조직진단	50	25	25	23.5.22.	23.10.31.~24.6.30.
30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31	—	31	23.3.20.	23.12.12.~24.6.12.
31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61	31	30	23.9.18.	23.12.20.~24.6.20.
32	각급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9	—	69	23.5.22.	23.12.22.~24.6.22.
33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98	49	49	23.10.16.	23.12.21.~24.6.21.
34	강제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70	—	70	23.7.24.	23.12.28.~24.8.28.
35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28	—	28	22.12.12.	23.12.15.~24.4.15.
합 계		951	456	495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년간 법원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불용액
					이월액	이월률	
2019	1,000	225	1,225	1,066	118	9.6	41
2020	900	118	1,018	679	339	33.3	—
2021	990	339	1,329	471	469	35.3	389
2022	990	469	1,429	973	454	31.7	2
2023	990	454	1,444	914	494	34.2	37

자료: 대법원 제출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¹³⁾,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¹⁴⁾고 명시하고 있음.

-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어 보이는 바, 향후 대법원은 이와 같은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87.

(5)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은 법원시설에 대한 개선·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58억 3,1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17억 5,800만원이며, 이 중 389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27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기능별 결산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원시설관리 등	45,831	142	△4,215	41,758	38,905	2,707	146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3,744	—	△1,900	1,844	1,219	595	31
사무환경 효율화	3,976	—	△800	3,176	3,044	92	40
민원환경 개선	17,902	142	△354	17,690	17,677	—	13
재판시설 확충	4,143	—	△789	3,354	3,342	—	12
청사안전관리	4,128	—	△311	3,817	1,798	2,020	—
청사보안강화	2,850	—	△149	2,701	2,673	—	28
관사확충 및 개선	3,291	—	△1	3,290	3,290	—	—
법원연수관 운영	830	—	89	919	899	—	20
수원법원 운영	4,967	—	—	4,967	4,963	—	4

(나) 노후 시설 및 비품의 적절한 교체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①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사업은 내구연한을 도과한 냉방기나 복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② 사무환경 효율화는 각급 법원의 노후·협소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③ 재판시설 확충은 노후화된 법정 내부 인테리어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후화된 법원 시설 및 비품을 교체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해당함.
- 그런데, 법원의 비품 및 시설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비품 내용연수 도과 현황〉

물품	내용연수(년)	총 개수	내용연수 도과 개수(비율)	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비율)
법정 의자	8	13,858	7,895(57%)	2,762(20%)
법정 방청석	9	9,239	5,656(61%)	3,808(41%)
냉방기	10	497	232(47%)	52(11%)
냉난방기	9	1,246	493(40%)	89(7%)
디지털 복합기	6	2,733	1,754(64%)	미산정
방독면	7	13,507	7,869(58%)	1,562(1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대법원이 관리하는 법정의자와 방청석의 경우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도과한 상태이고, 디지털 복합기의 경우 전체 기기의 약 2/3가

내용연수를 도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단순히 1~2년의 도과가 아니라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장기간 도과한 물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내용연수란 일반적으로 유형 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고, 조달청은 「물품관리법」¹⁵⁾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내용연수를 도과한 물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¹⁶⁾, 국가기관은 근무 직원 및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내용연수를 물품의 교체 필요성 및 교체 예산 편성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음.

〈23년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예산안 산출 근거〉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2,355백만원

법정 냉방기 확충: 477백만원

－ 냉방기 내구연한 (6년) 감안 단계적 교체

노후장비(복사기 등) 교체: 1,878백만원

－ 복사기 등 내구연한과 법원 인원 및 청사면적 고려 단계적 교체

자료: 대법원

15)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16)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2. 세부지침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대법원은 시설 및 비품 교체 예산에 대해 내구연한(내용연수)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예산 집행이 아닌 편성 단계에서 개별 물품의 지속 사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구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임.
- 만약 교체 예정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물품의 노후화가 한계에 달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시급히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2.-나.-(4)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¹⁷⁾, 대법원의 시설과 비품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필요성이 있음. 향후 대법원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통해, 노후한 법원의 시설 및 비품을 시의적절히 교체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17)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2. 세부지침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6) 정보화사업 총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법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961억 4,3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012억 2,700만원이며, 이 중 863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33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는 사법업무 전산화, 전자소송,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등이 있음.

〈사법정보화운영(일반회계)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사법정보화운영 (일반회계)	96,143	7,210	△2,125	101,227	86,315	13,340	1,572	85.3
사법업무 전산화	45,250	931	△1,050	45,131	42,886	1,596	649	95.0
전자소송	8,504	—	△650	7,854	7,793	—	61	99.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18,461	5,923	—	24,384	14,802	9,355	227	60.7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구축	3,829	—	—	3,829	1,387	2,389	53	36.2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7,767	—	△411	17,356	16,774	—	582	96.6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332	356	△14	2,673	2,673	—	—	100

(나)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최소화 필요

- 대법원은 매년 초 사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¹⁸⁾. 그런데 대법원의 2023년 사법부 정보화사업 계획과 대법원에서 제출한 실제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을 비교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중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계약 목록>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발주 계획	공고일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1	전자소송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사업(27인치 모니터)	관리운영 담당관실	23.2. ~ 23.8.	23.10.	23.11.	23.11. ~ 24.2.
2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고속스캐너)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23.9.	23.10.	23.10. ~ 24.1.
3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 (시스템통합관제)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	23.11.	23.11. ~ 24.2.
4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	23.11.	23.11. ~ 24.2.
5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법관임용홈페이지 구축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5.	23.11.	23.12.	23.12. ~ 24.8.
6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3.	23.5.	23.8.	23.8. ~ 24.1.
7	사법업무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4.	23.8.	23.11.	23.11. ~ 24.5.
8	보안장비 구매 사업 (유닉스용 백신)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1.	23.11. ~ 24.2.
9	보안장비 구매 사업(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관리서버 OS)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0	보안장비 구매 사업(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8)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53> (주요사업 발주계획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발주 계획	공고일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11	보안장비 구매 사업 (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관리서버)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2	보안장비 구매 사업 (가설사설망 VPN 장비)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3	보안장비 구매 사업 (가설사설망 VPN 장비용 GBIC)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4	보안장비 구매 사업(AggregationTAP등)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1.	23.11. ~ 24.2.
15	전자법정 개선사업(노트북)	정보보호 담당관실	23.8. ~ 23.9.	-	23.12.	24.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중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계약 목록을 보면, 주로 계약의 체결일이 11월·12월 등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이 때문에 계약상 사업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2024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음.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의 취합과 이에 따른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져 발주 공고가 늦어졌고,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적정 사업기간¹⁹⁾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완료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함.
- 발주 공고 후 유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지연된 것은 불가피한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져 발주 공고를 늦게 한 것은 사업을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부터 신속히 준비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지연 사유일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각 정보화사업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7) 사법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는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451억 3,100만원으로 이 중 428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4,900만원 불용되었음.
- 사법업무 전산화의 내역사업인 시스템 및 보안관제 등 운영사업에는 해킹/디도스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 운용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23년 사법업무 전산화 보안관제 운영을 위해 8억 5,200만원 편성되어 8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 전산화	45,250	931	△1,050	45,131	42,886	1,596	649
시스템 및 보안관제 등 운영	2,999	—	—	2,999	2,950	—	49
보안관제 운영	852	—	—	852	837	—	15

(나)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 필요

-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1. 1. 7.부터 23. 2. 9.까지 있었고, 최초 침입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1. 1. 7. 이전부터도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공격자는 2년여에 걸쳐 국내외 서버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하였고, 유출 자료 중 0.5%인 4.7GB의 자료(5,171개)에 대해서만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개인정보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법원 전산망 침입 및 자료 유출 기간〉



자료: 경찰청 보도자료 (24. 5. 13.)

- 해킹 사건에 대하여 국회²⁰⁾·언론매체²¹⁾ 등에서는 ① 대법원이 악성 코드 ‘라자도어’를 발견한 최초 시점이 2023년 2월이고 12월에 국정원 등 합동조사가 시작된 점, ② 관리자 비밀번호를 ‘123qwe’와 같

20)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 23.12.6.

21) 노컷뉴스, [단독]‘北해킹’ 반년 넘게 숨긴 법원…털린 비밀번호는 ‘123qwe’, 23.12.5.

은 단순 문자열로 설정하고 6년 이상 바꾸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낮은 보안의식과 보안역량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대법원은 해킹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사업을 진행하고, 『사법부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보안관제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대법원이 소장한 자료는 개인 신원 및 재정 상황처럼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므로, 대법원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따라서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보안관제 사업 수행업체로 2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시스템 보안관제를 위해 주로 이 중 한 업체와 단일 응찰로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그리고 대법원 효율적인 보안관제 사업관리를 위해 사법업무 전산화, 전자소송(1331-302),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가족등록업무 전산화(1332-303),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등 각 세부사업 보안관제를 통합하여 발주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법업무 전산화 및 전자소송 보안관제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수주업체	발주시기	계약시기	발주금액	계약금액	계약형태
2020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주)이글루코퍼 레이션	19.09.27. (장기 1차)	20.01.~ 20.12.	1,128	1,071	경쟁
2021년			20.11.25. (장기 2차)	21.01.~ 21.12.	1,127	1,071	
2022년			21.09.13. (장기 1차)	22.01.~ 22.12.	1,127	1,085	경쟁→ 수의
2023년			22.10.31. (장기 2차)	23.01.~ 23.12.	1,150	1,098	
2024년			23.10.31. (장기 1차)	24.01.~ 24.12.	1,175	1,140	경쟁→ 수의

자료: 대법원 제출

〈2023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업체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사법업무 전산화	1,019	973	(주)이글루코 퍼레이션
	전자소송	131	125	
	등기업무 전산화	725	692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367	350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	410	391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보안관제 실패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현재 해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보안관제 수행 업체의 과실 유무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함.

어떤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가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가 저조해지거나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이 안일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관계 업체 입찰에 있어서도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계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정보보호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해킹 사건 이후 보안관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소관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직급을 국장급(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실장급(사법정보화실장)으로 격상하고, 지방법원 전산 인력 1인을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보안전문가²²⁾ 1인을 추가로 공개 채용(전문임기제 6급)하였음. 현재 정보보호담당관실은 총 15인(정보보호팀 11인, 전자법정팀 5인, 1인 겸무)으로 구성되어 있음.

22) 전문임기제 6호로 신규 임용한 보안전문가는 ISO27001(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격, CCIE(시스코 네트워크 전문가 최상위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유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분장사무표23〉

정보보호 담당관실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	---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직원 업무분장〉

직원	직급	업무 분장
A	서기관	정보보호담당관, 전자법정/영상재판 총괄
B	실무관	정보보호담당관실 서무, 가상화시스템 운영
C	사무관	보안기획/운영, 보안관제, 망분리, 법원행정전자서명 총괄
D	행정관	보안기획, 보안관제사업, 사법보안장비운영, 가상화시스템 기획·사업
E	실무관	사법보안장비운영, 사법보안장비사업
F	실무관	사법보안장비사업, 보안관제, 법원행정전자서명, PC보안
G	실무관	등기/가족 보안장비운영·사업
H	실무관	차세대전자소송, 미래등기 지원(보안)
I	실무관	보안관제, 법원행정전자서명, PC보안
J	실무관	세종센터 보안 지원
K	사무관	개인정보보호 총괄
L	행정관	개인정보보호
M	행정관	전자법정 구축, 증설,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전자법정 지원
N	실무관	법정녹음·영상재판·재판안내·법정제어 운영 및 유지보수
O	실무관	영상재판 구축, 개선
P	실무관	영상재판/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자료: 「법원행정처 각 실·국 직원현황」, 2024년 2월 19일 기준

그런데, 정보보호담당관실 분장사무표를 보면 정보보호담당관실이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되어

2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있는데, 이는 전자법정·영상재판 관련 시설을 구축/개선하고,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로, 정보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실제로 정보보호조직의 책임자인 정보보호담당관(4급)이 전자법정·영상재판 총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안관제 업무수행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보호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보안운영과 보안기획 업무가 서로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법원 정보보호조직은 한정된 인원이 인증서 관리나 솔루션 구매와 같은 보안 외의 업무를 겸직하다보니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해서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제, 개인정보 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국가정보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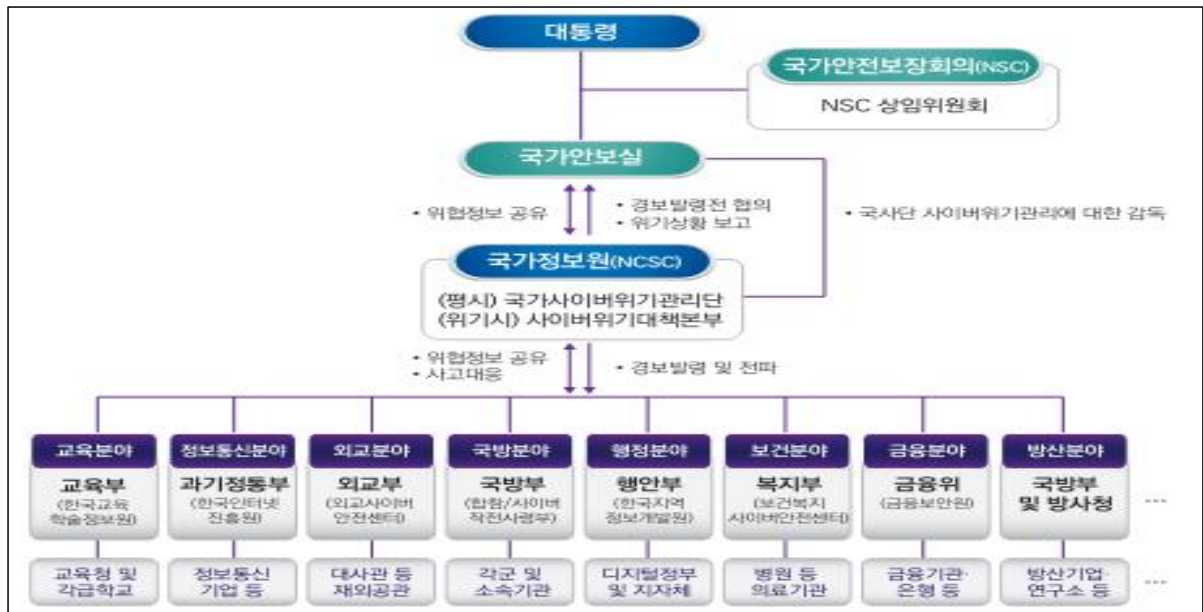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²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매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24)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있는데²⁵⁾, 대법원 직원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²⁶⁾.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자료: 『2024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p.10

보안관제에 있어 비전문기관인 대법원은 사법부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 효율적인 보안관제 업무 수행 및 직원 보안의식과 보안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2023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연례보고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p.38

2023년에는 사이버보안 담당자 1,49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정책,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관제, 악성 코드 분석 등 32개 교육 과정을 진행함.

26) 다만 대법원은 법원의 정보보호 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가 받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에서, 현재 매년 약 8명 정도가 민간의 IT 전문교육(삼성SDS 멀티캠퍼스, IBM, 오라클 교육센터 등)을, 매년 약 12~13명 정도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을 각각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함.

(8)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3)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93개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243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4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93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023년 11월부터 4차연도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9월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개통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음.

<2023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8,461	5,923	-	24,384	14,802	9,354	229

(나) 과업변경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대법원은 2024년 6월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 (LG CNS 컨소시엄)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사업자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요청서에 없었던 추가적 과업을 요구 받았다는 취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은 계약 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과업의 추가는 없었다는 입장임.

이에 사업자는 2024년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²⁷⁾(이하 “조정위”라 함)에 조정청구를 하였는데, 조정위는 사업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 하였으며, 대법원은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소송이 진행될 예정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1) 분쟁과정			
날짜	주체	내용	비고
24. 1. 23.	청구인	조정 청구	
24. 5. 14.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24. 6. 10.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보	
24. 6. 24.	피청구인(조달청), 수요기관(법원행정처)	이의제기서 제출	피청구인 및 수요기관 모두 제출
(2) 조정청구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

청구인: (주)엘지씨엔에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주)모빌씨앤씨

피청구인: 조달청(수요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청구금액: 20,200,000,000원(①+②)

① 업무 이관 및 통합 부분 122억원, ② 전자소송포털 부분 80억원

(3) 조정결과

1) 업무이관 및 통합 부분 인용(조정 청구금액 122억원)

“업무이관 및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 및 조정금액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과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3자의 감정을 받아 재산정하되, 감정인에 대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안하는 3인의 감정인 중 청구인이 1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전자소송포털시스템 구조개선 부분은 기각(조정 청구금액 80억원)

자료: 대법원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점점 구체화되는 한편, 사업 기간이 길어 대외적인 환경도 자주 바뀌는 등, 일정 부분의 사업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²⁸⁾.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화 사업의 계약에 있어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발주처는 과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가적 과업이 당초 요구사항 범위 내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임.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조정위에서 “업무이관 및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추가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사업비에 대한 예측성·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8) 권기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지급 방안」, 2013, p.2

○ 한편,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당시, 잦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과업내용 변경,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이하 “과심위”라 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²⁹⁾, 대법원 산하에도 과심위가 설치되어 있음³⁰⁾. 그런데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심위가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고(2023년 6월), 그 심의 결과³¹⁾가 계약 사항에 반영되지도 못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심위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과심위를 계약 진행 단계별로 여는 등 상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분쟁이 심화된 단계가 아니라 내부적 사업 관리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0)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대법원 내규 제540호)」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업내용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4. 적정 사업기간 산정

5. 소프트웨어사업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1) 심의결과 : “제출된 자료로는 기준선 대비 추가 과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기능점수 방식의 금액산정의 객관성이 요구되는바, 공정한 외부기관의 검증을 통한 변경범위, 물량 계약금액 조정과 과업변경 전후 물량 비교자료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단, 3차 사업 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하되 전체 사업 기간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분쟁이 해당 사업의 완수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발주처와 사업자의 관계 악화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³²⁾.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2024. 9. 개통 예정)이나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2025. 6. 개통 예정)과 연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하나의 시스템 개통이 연기되면 다른 시스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추가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사업 계약에 있어 과업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견 발생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32) ‘복지부-LG CNS 컨소시엄, 계약 해지 수순... 책임소재 공방 본격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9846635774888>), 이데일리, 23.10.20.

(9) 도서관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사업은 도서 구입, 법원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도서관 문화행사 등 법원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7억 3,200만원,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25억 7,800만원이며, 이 중 25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도서관 운영지원	2,732	—	△154	2,578	2,577	—	1

(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억 5,7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이 중 3백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2	—	△154	2,578	2,577	—	1
도서구입	1,379	—	—	1,379	1,379	—	—
재판부장기대출도서	117	—	—	117	117	—	—
전자책(e-Book) 구입	219	—	—	219	219	—	—
서가구입	54	—	—	54	54	—	—
여비	10	—	—	10	10	—	—
직무수행경비	21	—	—	21	21	—	—
국내외 추록	75	—	—	75	75	—	—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등	357	—	—	357	356	—	1
해외거점도서관사업	16	—	—	16	16	—	—
도서보존사업	48	—	—	48	48	—	—
도서관 문화행사	123	—	—	123	123	—	—
구술총서 등 발간	38	—	—	38	38	—	—
도서발간	55	—	—	55	55	—	—
전국법원도서관 RFID 도입	63	—	—	63	63	—	—
시설유지관리	157	—	△154	3	3	—	—
□ 세목별 분류(합계)	2,732	—	△154	2,578	2,577	—	1
일반수용비(210-01목)	712	—	—	712	711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57	—	△154	3	3	—	—
국내여비(220-01목)	10	—	—	10	10	—	—
특정업무경비(250-03목)	21	—	—	21	21	—	—
자산취득비(430-01목)	1,832	—	—	1,832	1,832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구체적인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예산 1억 5,7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는데, 1억 1,0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으로 이용(자체이용)되었고, 4,400만원은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 인건비(7001-151) 사업으로 전용(승인전용)되었음.

〈2023년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자체이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110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2 (공공요금 및제세)	공공요금 부족
전용 (승인전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44	일반인건비 (7001-151)	110-01 (보수)	본부 인건비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법원도서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 법원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억 5,7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반영하였음. 그런데 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 등은 공사에 해당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사비(420-03목)로의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종합열람실

정문 외벽 유지보수비로만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가 아니라 공사비(420-03목)로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예산 집행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12. 1.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2,607,000원 (반올림하여 3백만원)	법마루(종합열람실) 정문 외벽 유지보수비

자료: 법원도서관 제출

〈2023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예산 산출근거〉

□ (2023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 0 → 157백만원(순증)

* 시설유지관리비(210-09) : 0 → 157백만원(순증)

- 점자블록 보완 설치 : 14백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보도 경사로,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 7백만원
- 자동문 설치 및 축지도 : 12백만원
-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70백만원
- 기타 공사 소요경비(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54백만원

자료: 대법원,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예결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2024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예산 산출근거〉

□ (2024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 157백만원(전년동)

* 공사비(420-03목) : 157백만원(전년동) ※ 금액만 전년동, 세목은 변경

- 법마루 안내데스크 개선 및 시설 보완 : 110백만원
- 대법원 열람실 안내데스크 등 환경개선 : 32백만원
- 서고 향온·향습시설 보완 등 : 15백만원

자료: 대법원,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예결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공사비(420-03목)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가 ‘법마루 안내 데스크 개선 및 시설 보완’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용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과목의 부적절한 선정, 연도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실패, 그리고 결국 연말 해당 예산을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모든 중앙관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 의결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실패 등 사업담당자의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0) 연수원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사업은 법관 및 신규임용법관 연수, 재판 연구원 교육, 법관숙소 리모델링 등 사법연수원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64억 6,0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65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수원 운영지원	6,460	—	91	6,551	6,511	—	40

(나)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명목으로 관리용역비 (210-15목)³³⁾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3,600만원은 다른 사업 예산으로 변경 집행되었고, 6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33)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년도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60	—	91	6,551	6,511	—	40
청사운영	412	—	239	651	650	—	1
청사청소시설관리 등	2,759	—	—	2,759	2,738	—	21
시설보수공사	543	—	—	543	543	—	
교육발전연구센터	130	—	—	130	130	—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44	—	54	98	98	—	
재판연구원 교육	51	—	—	51	51	—	
이러닝시스템 사업비	250	—	—	250	249	—	1
신규임용법관 역량개발	218	—	—	218	218	—	
법원실무제요 발간 등	261	—	—	261	261	—	
법관숙소 리모델링	1,510	—	△166	1,344	1,344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42	—	△36	6	—	—	6
승강기 교체공사	240	—	—	240	229	—	11
□ 세목별 분류(합계)	6,460	—	91	6,551	6,511	—	40
상용임금(110-03목)	1,713	—	—	1,713	1,696	—	17
일반수용비(210-01목)	644	—	26	669	669	—	—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313	—	239	552	552	—	—
피복비(210-03목)	5	—	—	5	5	—	—
임차료(210-07목)	5	—	1	6	6	—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0	—	—	10	10	—	—
복리후생비(210-12목)	63	—	△11	52	52	—	—
일반용역비(210-14목)	250	—	△40	210	209	—	1
관리용역비(210-15목)	705	—	4	709	700	—	9
사업추진비(240-01목)	3	—	—	3	3	—	—
특정업무경비(250-03목)	55	—	—	55	55	—	—
일반연구비(260-01목)	—	—	—	—	—	—	—
포상금(310-03목)	20	—	—	20	20	—	—
고용부담금(320-09목)	331	—	—	331	330	—	1
공사비(420-03목)	2,193	—	△130	2,063	2,051	—	12
자산취득비(430-01목)	151	—	3	154	154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2023년 관리용역비(210-15목) 예산의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으로 3,600만원이 내역변경³⁴⁾³⁵⁾되었음.

〈2023년도 관리용역비(210-15목) 내역변경 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210-15 (관리용역비)	36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제세)	공공요금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 600만원은 불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34)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이용, 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 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가능(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5)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과 본부 운영지원(7031-303)은 동일한 단위사업(7031, 사법운영지원)에 속하는 세부사업이고, 관리용역비(210-15목)와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는 동일한 목(210목, 운영비)에 속한 세목임.

<2022~2024년도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예산 산출근거>

연도	산출근거	비고
2022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 1,014백만원(신규) - 시스템 구축 개발비(260-01목) : 173백만원 -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확충(430-01목) : 841백만원	불용 1,014백만원
2023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42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210-15목) : 42백만원	이·전용 등 36백만원 불용 6백만원
2024	관련 예산 미편성	-

자료: 사법연수원 제출

- 2023년도에 편성된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2022년도 해당 시스템의 구축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법연수원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탓이 크다고 보이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임.

- 사법연수원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반영한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등기특별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2023년에는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6억 6,0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6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0만원은 미수납한 상태임.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55	660	659	1	-

(나)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 납부금을 반영하여 예산과 수납액의 불일치 해소 필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³⁶⁾에 따라 세입·세출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그 밖의

3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 ④ (생략)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에는 유희등기소인 구 남대전등기소의 토지 및 건물 사용허가³⁷⁾로 인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³⁸⁾와,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받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이자³⁹⁾로 인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음.

- 등기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편성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다가 2015년 수납액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부터 최초로 1억 4,8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021년까지 6년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수납액은 매년 예산현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납액이 100만원에 불과하여, 2020년 국회 결산심사결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하라고 주의를 받은 바 있음⁴⁰⁾.

37) 사용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용허가기간: 2023.9.22. ~ 2024.9.21., 사용료: 77,433,330원, 2회 분할납부

38)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39)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40)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68

이에 대해 대법원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2022년부터 1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7백만원 증액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세입예산액을 상회하는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바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편성 경과(2015~2024)〉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액 상세 내역 ⁴¹⁾
	본예산	추경(A)				
2015	—	—	—	126	126	—
2016	148	148	148	144	44	—
2017	148	148	148	119	119	—
2018	148	148	148	13	13	—
2019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0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1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2	155	155	155	213	213	은평등기소 매각 이자(208) 남양주·구리 등기소 환급금 반납(3) 국고예금이자(1)
2023	155	155	155	660 ⁴²⁾	659	은평등기소 매각 이자(658) 국고예금이자(1)
2024	155	155	155	—	—	—

자료 : 대법원 제출

41) 대법원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별표1]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인 이유로 2019년 이전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상세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함.

42) 남대전등기소 토지 및 건물 대여료 이자 978,920원은 납입기한이 2024년 3월 31일까지여서 2023년 결산시는 미수납액이었으나, 2024년 3월 18일 수납되었음.

○ 이는 대법원이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구 은평등기소를 매각하였고, 은평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라목⁴³⁾에 해당하는 용도로 구 은평등기소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대법원이 은평구로부터 매각대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이자수입에 기인하는데,

기획재정부 고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⁴⁴⁾에 따른 고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의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이자수입 예상액을 산출⁴⁵⁾한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44)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45) 이자 산정 산식 = [잔여원금 × 기간(전년도 납부일부터 당해연도 납부일까지의 일수) ×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80%)]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이자금액 및 예상액(2022~2030)>

(단위 : 원)

연도	원금 (회차별 원금)	고시이자율 ⁴⁶⁾	일수 ⁴⁷⁾	이자금액
2022	24,441,365,770	1.24	250/365	208,448,560 ⁴⁸⁾
2023	21,725,656,000	2.82	392/365	657,983,810
2024	19,009,949,000	2.82	366/366	536,840,960
2025	16,294,242,000	2.82	365/365	460,149,390
2026	13,578,535,000	2.82	365/365	383,457,830
2027	10,862,828,000	2.82	365/365	306,766,260
2028	8,147,121,000	2.82	366/366	230,074,700
2029	5,431,414,000	2.82	365/365	153,383,130
2030	2,715,707,000	2.82	365/365	76,691,570

자료 : 대법원 제출

○ 즉, 대법원은 구 은평등기소 매각으로 인한 이자가 2022년부터 세입
 예산액 1억 5,50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액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부터 동일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실제 징수
 결정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계상하였는데,

세입을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과소하게 추계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과소 추계액만큼의 실제 세출 규모가

46) 2024년도 이후 이자율은 2023년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가정하여 계산함

47) 2023년도 이자 산출시에는 실제 납부일을 계산하여 392일로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실제 납부일을 알 수 없으므로 1년 단위로 계산함

48) 208,448,560원 = [2,075,840원(A) + 206,372,720원(B)]

※ 1차 이자 납부일 당시 징수할 이자액 : 24,441,365,770원 × 1.24% × 250/365 = 207,584,200원

(A) = 1차 이자 납부일(2022.3.7.) 당시 징수한 이자 2,075,840원

(B) = 1차 이자 납부일(2022.3.7.) 당시 미지급 이자 205,508,360원 + 미지급 이자에 대한 이자 징수금 864,380원 = 206,372,720원(2022.6.30. 최종 납부)

줄어들어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료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수입 예상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 출》

(2)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 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73억 8,2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76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52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소 신증축	17,382	1,688	△1,339	17,670	15,227	2,404	39

(나)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예산비목 중 일반수용비는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용도로 4억원, 등기소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용도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집행률은 14.9%부터 51.3%까지로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현황(2021년~2023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1	487	198	40.6
2022	487	250	51.3
2023	487	73	14.9

자료 : 대법원 제출

- 최근 3년간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이전하게 된 등기소들의 현황 및 이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통합등기소의 경우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사이 정도로, 일반 등기소 리모델링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 수준으로 이전비 및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신증축 등기소 이전 및 이전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

(단위: 원)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 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1	신축	부산통합등기소	부산통합등기소	2021. 3. 14.	141,116,240
	리모델링	진천등기소	진천등기소	2022. 1. 23.	8,900,000
		영암등기소	영암등기소	2021. 12. 26.	28,739,000
		동수원등기소	동수원등기소	2021. 3. 1.	26,250,000
		하남등기소	하남등기소	2022. 2.28.	-49)
2022 ⁵⁰⁾	신축	대전통합등기소	대전통합등기소	2022. 10. 3.	149,138,000
	리모델링	보은등기소	보은등기소	2022. 11. 27.	24,750,000
		장수등기소	장수등기소	2022. 12. 10.	26,428,000
		인제등기소	인제등기소	2023. 1. 7.	21,960,000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 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3 51)	리모델링	문경등기소	문경등기소	2023. 12. 16.	23,723,500
		화천 또는 남해등기소	남해등기소	2023. 12. 2.	28,937,000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통합등기소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연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연도에 비해 이전비 소요가 크고 리모델링이 되는 등기소의 수에 따라 이전비 소요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신증축 사업에서는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전비 관련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3년은 예산 편성 당시 통합등기소 완공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리모델링 예산이 전년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3곳에서 2곳으로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이 더욱 부진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당해연도의 등기소 완공 현황과 리모델링 실시 계획에 따른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9) 등기소 내부 공사시 주말 이용 등의 사유로 이전비 미발생

50) 2022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1,478,000원 집행

51) 2023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0,250,000원 집행

(다)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절차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 등기소 리모델링 20억원과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10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고, 2023년 예산현액은 29억원으로 이 중 19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3,014	31	△145	2,900	1,982	910	7

- 이 중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10억 1,400만원 중 감리비 1억원을 등기특별회계 인건비로 승인이용하였고, 예산현액 9억 1,400만원에서 공사비 9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백만원 집행 및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은 1개의 행정구역인 여수시에 2개의 소규모 등기소⁵²⁾가 운영되고 있어 인적·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감축,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통합등기소

52) 여수등기소(1975년 건축,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40번지, 건물면적 490.81㎡), 여천등기소(1988년 건축,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7-1번지, 건물면적 905.48㎡)

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에 총사업비 77억 4,000만원 중 7억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으며, 당시 공사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예상되었음.

〈2021년도 예산의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7,740	763	2,843	4,134
○ 토지매입비	3,065	565	1,500	1,000
○ 공 사 비	4,113	—	1,234	2,879
○ 시설부대경비	562	198	109	255
－ 기본설계비	91	91	—	—
－ 실시설계비	107	107	—	—
－ 감리비	350	—	105	245
－ 시설부대비	14	—	4	10

자료 : 대법원 제출

- 이후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여수시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설계용역 계약⁵³⁾을 체결하여 기본·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 2022년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소요⁵⁴⁾가 확인되었으나, 대법원은 2023년 예산에 증액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2024년 예산안 정부심의 과정에서 감리비 요구액 일부분을 제외한 22억 1,200만원이

53)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여수등기소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1.10.22.~2022.8.17.	185,000,000원

54) 공사비 증액 15억 900만원 상세 내역(물가상승분 6억 800만원, 각종 법규 및 지침 준수로 인한 추가비용 1억 6,900만원, 부지 특성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비용 5억 500만원, 내·외장재 변경 2억 2,700만원)

증가한 99억 5,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증액한 후,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문공사들의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14일 착공일부터 총 공사일을 360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9,952	3,518	300	1,014	2,563	2,564
○ 토지매입비	3,613	3,320	293	—	—	—
○ 공 사 비	5,622	—	—	910	2,356	2,356
○ 시설부대경비	717	198	—	104	207	208
— 기본설계비	111	91	—	—	20	—
— 실시설계비	107	107	—	—	—	—
— 감리비	483	—	—	100	185	198
— 시설부대비	16	—	—	4	2	10

자료 : 대법원 제출

- 그러나, 건설공사의 착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21조제2항55)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선정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2024년 3월 기획재정부와 감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마쳤지만 6월말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지 못한 상황으로 2024년 하반기

55)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착공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여수등기소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 될 것으로 보임.

〈2024. 3. 기준 감리비 증액에 따른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최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1,082	3,323	478	3	3,473	3,795
○ 토지매입비	3,613	3,320	293	—	—	—
○ 공사비	5,622	—	—	—	3,266	2,356
○ 시설부대경비	1,847	3	185	—	207	1,439
— 기본설계비	111	3	78	—	20	—
— 실시설계비	107	—	107	—	—	—
— 감리비	1,597	—	—	—	185	1,412
— 시설부대비	32	—	—	3	2	27

자료 : 대법원 제출

- 즉, 여수등기소는 최초 계획시 준공월인 2023년 12월보다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도 최초 계획 당시 77억 4,000만원 보다 33억 4,200만원 (43.1% 증가)이 추가된 110억 8,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임.
- 첫째, 대법원이 2022년 설계과정에서 확인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속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한 설계보고회(2022. 3. 29.) 당시부터 요율

및 단가 변동으로 공사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⁵⁶⁾.
그 후 4차례 실시설계 협의후 5차 실시설계 협의(2022. 6. 9.)에서
총 공사비가 52억 8,400만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계용역
사업자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⁵⁷⁾.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⁵⁸⁾이 아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
편성기간(6월~8월)에 일괄하여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⁵⁹⁾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2022년 상반기 이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친 결과⁶⁰⁾ 기획재정부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이 중단⁶¹⁾되었음.

- 둘째, 2024년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정 감리비를
반영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된 점임.

56) 「여수등기소청사 신축 기본설시설계용역 종결보고서」, 2023.10., p.95

57) 「여수등기소청사 신축 기본설시설계용역 종결보고서」, 2023.10., p.104

58) 건축사업의 경우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기획재정부 훈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59)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21

60) 22.8.9. 대법원은 사업자와의 실시설계 회의에서 사업예산 추가계획을 표명함

61) 기본설시설계용역의 최초 계약기간은 2022년 8월까지였으나,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못해 용역계약이 중단되었고, 용역계약상대방과 건축비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확정되는 때 공사비 산정 내역과 설계를 수정하여 납품한다는 협의 후 2022년 12월 종결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10월 공사비 최종 증액 부분을 반영한 수정된 종결보고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감리비 산출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⁶²⁾과 실비정액가산방식⁶³⁾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은 2021년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3억 5,000만원⁶⁴⁾이 편성된 바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⁶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 대가 산출 내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⁶⁶⁾에 따라,

-
- 62)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배분
 63)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64) 공사비 41억 1,300만원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8.52%
 65)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6)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연면적 1,661.49㎡인 여수등기소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 발주해야 하는 사업임.

대법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 총 감리비를 21억 5,1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효율 방식을 준용해 4억 8,300만원만 인정했고, 이 예산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한 건설사업관리계획과 부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2023년 감리비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할 수 없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4년 2월 조달청의 감리비 조정 검토를 거쳐 2024년 3월 기획재정부와 총 감리비를 15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는 총 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음.

-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대법원은 2023년 사업이 중단된 동안 실제 감리비 소요 예산을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2024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감리비 총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2023년 말 건축공사 등 발주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 경우 공사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져 완공도 현재의 예상인 2025년 하반기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앞당겨졌을 것임.

-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적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등기소 신축 사업이 실제 계획보다 지연되며, 이 경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인 편익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2021년~2023년도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이월 및 불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편성	집행	이월	불용	편성	집행	이월	불용	편성	집행	이월	불용
○ 토지매입비	565	3,320 ⁶⁷⁾	—	—	300	293	—	7	—	—	—	—
○ 공 사 비	—	—	—	—	411	—	—	411	910	—	910	—
○ 기본설계비	91	3	78	10	—	—	—	—	—	—	—	—
○ 실시설계비	107	—	107	—	—	—	—	—	—	—	—	—
○ 감리비	—	—	—	—	35	—	—	35	100 ⁶⁸⁾	—	—	—
○ 시설부대비	—	—	—	—	4	—	—	4	4	3	—	1
총 계	763	3,323	185	10	750	293	—	457	1,014	3	910	1

자료 :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소 신축 등을 포함한 대법원 소관 국유재산 건축사업에서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사례와 같은 사업 지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절차별로 진행해야 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요구의 근거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7)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지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 부지매입비 납부를 요구함에 따라 세목조정을 통해 건설보상비 2,755백만원을 증액함

68) 등기특별회계 인건비(7001-152) 세부사업으로 승인이용

(3)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15억 3,2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08억 6,900만원이며, 이 중 40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전산화	41,532	1	△665	40,869	40,407	—	462

(나) 계약사무의 전문성 증진 필요

- 등기업무시스템은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및 인터넷 등기소 등 53개의 등기응용 정보시스템⁶⁹⁾으로 이루어지며, 제도개선

69) - 등기소 내부 업무시스템(23개) :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기타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 등기 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집행관통합 시스템, 집행관 관리감독 시스템, 부동산전환 시스템, 등기내부포털 시스템, 통합이미지전환 시스템, 재외국민등록번호 관리시스템, 법무사명부 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 시스템, 등기소환급 시스템, 수입징수관 환급시스템, 디지털등기소 시스템, 이미지음영화 시스템, 통계시스템, 이러닝시스템, 사용자지원시스템, SLM시스템, 무인발급기 서비스지원시스템, 전자 문서관리시스템
 - 대민서비스 시스템 (16개) : 부동산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부동산등기전자신청시스템,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통합전자등기시스템, 법인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법인등기 전자신청시스템,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발급시스템, 기타등기 인터넷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등기외부포털시스템, 전자납부시스템, 메일고지 시스템
 - 연계 업무 시스템 (14개) : 재판사무 전자촉탁시스템, 표시변경 전자촉탁시스템, 압류와압류말소 전

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는 위
시스템들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각종 성능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국가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⁷⁰⁾해야 하는데,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⁷¹⁾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⁷²⁾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촉탁시스템, 공동고유번호 연계시스템, 국민주택채권 연계시스템, 소유권변동 및 코드통지시스템, 법
인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연계시스템, 첨부서면 연계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연계시스템, 등
기수수료 은행연계시스템,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등록면허세 취득세 통지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연
계 유/무상열람시스템

-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
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
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
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
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
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
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 5. (생략)

- 2023년 대법원은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세 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2023년도 원가계산용역 대상 정보화 사업 및 원가계산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사업	20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	부동산 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
원가계산 용역금액	6	20	3.3
사업개요	등기응용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열람·발급 등 수수료 결제요청 및 정산에 이르는 전자지급서비스 대행	부동산등기 DB서버 3대 주요 자원 교체 및 증설, 백업서버 1대 구매
편성된 사업예산	16,716	전자지급결제 수단을 통해 징수된 수수료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없음	78.573)
입찰공고시 사업금액	17,350	8,613	1,389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작성방식	비예가	비예가	비예가
최초사업 시행연도	1998년	2008년	2023년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런데, 원가계산용역의 대상사업 세 건은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⁷⁴⁾으로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73) 해당사업은 금융리스를 통해 60개월 동안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78.5백만원 집행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⁷⁵⁾으로 세 계약 모두 최초 입찰 공고 당시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으로 계약금액 기준을 정하는 비예가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음.

- 즉,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산정한 사업예산이 계약 금액 결정 기준이 된 것이고, 별도의 예정가격으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원가계산용역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의 사업예산은 사업기간⁷⁶⁾ 동안 발생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예상 징수액에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각 결제수단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목의 예산 편성시 다음연도 수수료 예상 징수액을 예측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⁷⁷⁾」이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이 수취하는 수취료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②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76) 2023. 9. 1. ~ 2024. 12.

7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2023. 3. 31.

있으므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고도 담당공무원이 사업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은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대규모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과업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등의 큰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원가계산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신규사업인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물품 구매 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대법원이 취득한 물품은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기성품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견적요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 사업 구매내역〉

(단위: 백만원)

대상장비	물품명	금액
부동산등기 DB서버 2식	HPE Superdome2 OB900s i6	900
부동산등기 DB서버[DR] 1식	HPE Superdome2 OB900s i6	450
이중화 구성용 L2스위치 2식	HPE 5140 24G	10
OS백업용 Ignite 1식	HPE rx2800	28.2

자료 : 대법원 제출

- 한편, 국회는 2019년 결산심사시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 결제 대행 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원가계산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직접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⁷⁸⁾한 적이 있고, 대법원은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과거 국회의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이해 부족도 원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78)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49

(4) 등기업무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 등의 발행 경비, 등기신청사건 업무 처리비,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보수, 등기장비의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39억 8,6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60억 9,600만원이며, 이 중 258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운영지원	23,986	805	1,306	26,096	25,816	47	232

(나) 예산 이·전용 및 세목조정 활용시 정확한 추계 필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총 168개의 등기관서⁷⁹⁾ 청사의 각종 공공요금과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책임보험료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79) 광역 등기국 11개,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시·군법원 및 등기소 111개로 총 168개 관서이며, 지방 법원 건물에 위치해 독립청사를 활용하지 않는 등기관서를 제외하고 실제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해 청사 공공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사는 123개임.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집행액은 다음과 같은데, 2022년과 2023년 사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⁸⁰⁾ 등의 원인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액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현황(2021~2023)〉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	3,193	323	3,516	3,379	136
2022	3,420	475	3,895	3,837	58
2023	3,995	3,728	7,723	7,646	76

자료 :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부족한 공공요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전용·세목 조정을(이하 ‘이·전용 등’) 통해 예산액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다른 비목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으로 변경했음⁸¹⁾).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공공요금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용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재원을 보내주는 다른 비목을 활용하는 사업

80)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전기요금	116.27원/kWh	124.4원/kWh
가스요금	16.1841원/MJ	25.061원/MJ
대법원등기정보센터 공공요금 총 집행액	597,419,160원	960,454,960원

※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단가는 각각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일반용 전력 저압 여름철 및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기준임

81) 일반회계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 청사 및 분당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세부사업인 본부운영지원(7031-303)사업에서도 예산액 146억 4,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51억 2,900만원이 이·전용 등 되었음.

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전용 등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 향후 소요분만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일부 지방법원·지원 등의 일선 공공요금 집행 관서에서는 오히려 공공요금이 남아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에서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을 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에서 다른 세목으로의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보내는세목	받는 세목	금액	집행관서
2023-01-13	210-02	210-08(유류비)	1	성남지원
2023-10-05	210-02	210-01(일반수용비)	50	인천지방법원
2023-10-1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성남지원
2023-11-20	210-02	210-15(관리용역비)	5	제천지원
2023-11-20	210-02	210-01(일반수용비)	35	성남지원
2023-11-24	210-02	210-01(일반수용비)	8	성남지원
2023-12-13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21	210-02	210-01(일반수용비)	21	성남지원
2023-12-26	210-02	210-01(일반수용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수원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남원지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4	성남지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춘천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평택지원
2023-12-29	210-02	210-01(일반수용비)	8	여주지원
2023-12-29	210-02	210-01(일반수용비)	2	목포지원

자료 :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선 관서들이 세목조정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일선 관서의 관서운영경비로, 매년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90%를 배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일선 관서에 배정하고 이후 부족분 발생시 수시 요청을 받아 배정하고 있다고 함.

- 비록,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일선 관서들에서 동일 목 내에서는 세목간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총괄 회계관서인 법원행정처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관서의 경우 공공요금 배정액이 집행액보다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행정처로서는 이를 미리 파악하여 이 금액을 공공요금에 부족한 다른 관서로 재배정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재원 배분이라고 볼 수 있음.

- 2024년 등기업무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편성액은 5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전년도 집행액보다 부족한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다시 이·전용 등을 폭 넓게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청사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일선 관서들의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당해연도 공공요금 청구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 분기별로 각 일선관서들에 대해 구체적 액수로 확정된 공공요금 재배정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후 예산을 배분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인건비가 연말 부족하다고 추계하여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서 등기특별회계 인건비로 7억 1,400만원을 승인 전용하였으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등기특별회계 인건비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으로 다시 7억 1,100만원을 자체전용 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최초 불필요한 전용을 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전용 등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각 사업의 부족한 예산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과 등기특별회계 인건비 간 상호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이·전용 등 일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7	32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8	163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9	196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15	44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420-03	69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430-01	210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27.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140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2023.12.28.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528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2023.12.28.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5	43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자료 :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5) 일반회계 전출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전출(8010-800) 사업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1,702억 1,100만원이며, 이 중 111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90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일반회계 전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전출	170,211	—	—	170,211	11,176	—	159,035

(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확대 필요

-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는 전년도 결산상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빼는 개념인 전년도세계잉여금 목을 두고, 세출 과목에는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일반회계 전출 비목을 둔 채로 이들을 예측치로 편성하는 것을 통해 세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고 있음.

- 그런데, 등기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임.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9	74,634	24,586	32.9%
2020	81,521	—	—
2021	95,701	29,181	30.5%
2022	50,305	—	—
2023	170,211	11,176	6.6%

자료 : 대법원 제출

-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결정해야 할 매년 연말에도 수수료 및 면허료 수입을 포함한 세입의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⁸²⁾ 당해연도 총세입 징수액과 총세출 집행액의 실제 차이인 일반회계 전출금의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등기특별회계는 최근 3년간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어 세출 순계 규모의 큰 변동이 없으므로, 면허료 및 수수료 징수액 추이를 면밀히 추산할 경우 연말에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규모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82) 2023년의 경우 12월 31일 전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의 7.7%에 해당하는 12월분이, 2024년 1월 20일 전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의 1.5%에 해당하는 13월분이 징수 마감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2023년 12월 29일(2023년 평일 마지막날)에 확정됨

최근 5년간 결산을 살펴볼 때 비록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한 등기 특별회계의 세입 순계의 변동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재정여력이 매년 줄고 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2023년의 경우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등기특별회계 재정여력(2019~2023)〉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총계 (A)	전년도 세계 잉여금(B)	세입순계 (A-B=C)	세출총계 (D)	일반회계 전출(E)	세출순계 (D-E=F)	특별회계 재정여력 (C-F=G)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집행 가능액 (A-D=H)
2019	287,343	42,283	245,060	246,676	24,586	222,090	22,970	40,666
2020	318,867	40,666	278,201	240,970	-	240,970	37,231	77,897
2021	353,446	77,897	275,549	279,761	29,181	250,580	24,969	73,685
2022	317,306	73,685	243,621	249,256	-	249,256	△5,635	68,050
2023	301,102	68,050	233,052	264,203	11,176	253,027	△19,975	36,872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일반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되고 국가결산을 통해서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국가재정법⁸³⁾에 따라 국채 상환 등의 재원이

8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

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국가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매년 연말까지 총세입의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 괄》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12월 15일 「공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
- 동 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는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⁸⁴⁾ 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판활동지원(소송구조지원, 조정제도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등), 사법정보화운영(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임.⁸⁵⁾

84) 「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5)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소송구조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조정제도지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에 민간경상보조
소년보호 등 지원	소년보호재판 및 아동보호절차 지원,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 지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소송자료 검색, 첨부서류 제출 등 전자소송 이용상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 최근 5년간 동 기금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기금규모는 계획 (현)액 기준 2019년 745억 6,700만원, 2020년 1,157억 9,200만원, 2021년 1,468억 1,100만원, 2022년 1,874억 2,000만원, 2023년 2,011억 8,100만원 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바,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70% 증가함.
-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규모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 중이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484억 8,300만원, 2020년 531억 1,600만원, 2021년 671억 3,900만원, 2022년 718억 6,400만원, 2023년 701억 7,300만원으로 2023년에는 2019년에 비하여 약 145%가 증가하였음.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러나 전체 기금에서 주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획(현)액 기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70.5%→ 2023년 38.3%)하고 있으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50%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및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기금	계획(현)액(A)	74,567	115,792	146,811	187,420	201,181
	집행액(B)	94,569	135,870	123,597	133,285	136,889
주요사업비	계획(현)액(C)	52,565	62,382	82,289	80,133	77,139
	집행액(D)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집행률(D/C)	92.2	85.1	81.6	89.7	91.0
주요사업비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70.5	53.9	56.1	42.8	38.3
	집행액 기준(D/B)	51.3	39.1	54.3	53.9	51.3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⁸⁶⁾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여유자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360억 400만원이 증가한 1,203억 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86) 여유자금은 특정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①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②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포함함[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제3호]

〈최근 5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예치)	여유자금 규모 (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증감
2019	9,744	46,087	55,988	36,342
2020	43,343	82,754	95,339	39,351
2021	39,048	26,459	83,177	△12,162
2022	26,459	31,420	84,383	1,206
2023	3,920	36,715	120,387	36,004

자료: 대법원 제출

-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켜 재정지출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재정제도이므로,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주요 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여유자금의 과다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⁸⁷⁾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금 사업의 조정 또는 근본적인 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⁸⁸⁾
- 특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에 해당하므로,⁸⁹⁾ 이러한 점이 기금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함.

87)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2019.5.)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부적정’한 측면(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보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를 관망할 필요)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기금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며 주요 사업들이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88)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나라살림 리포트(2019-제12호), 2019. 12.

- 따라서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영역이 소송구조,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등으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의 고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공탁법」에 따른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⁹⁰⁾을 발굴하여 기금으로 이관·편성하는 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89) 김선옥, ‘기금의 신축적 운영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18. 12.

<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분류>

분류	주요 내용
사업성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금융성기금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기보다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사회보험성기금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2014.5.

- 90) 예를 들어, 현재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지원(1143-409)’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① 현행 「공탁법」 제31조에 따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 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동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일반회계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출연금에서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가, 2015년 출연금이 계획만큼 확보되지 않아 2016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 이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고 있는 점, ③ 법원행정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 및 규모 증대를 통하여 국선변호료 지원 비용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사업 중 기금 사업으로 이관·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감사원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관련 감사 보고서(2022. 8.)에서도 유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수 입》

(2) 민간출연금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민간출연금(59-594)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기 위한 과목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906억 3,600만원 중 1,008억 9,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2023년도 민간출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목명 · 세목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수정						
민간출연금	90,636	90,636	—	90,636	100,894	100,894	—	—

(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에 있어 공개경쟁 방식 확대 및 심사·평가 기준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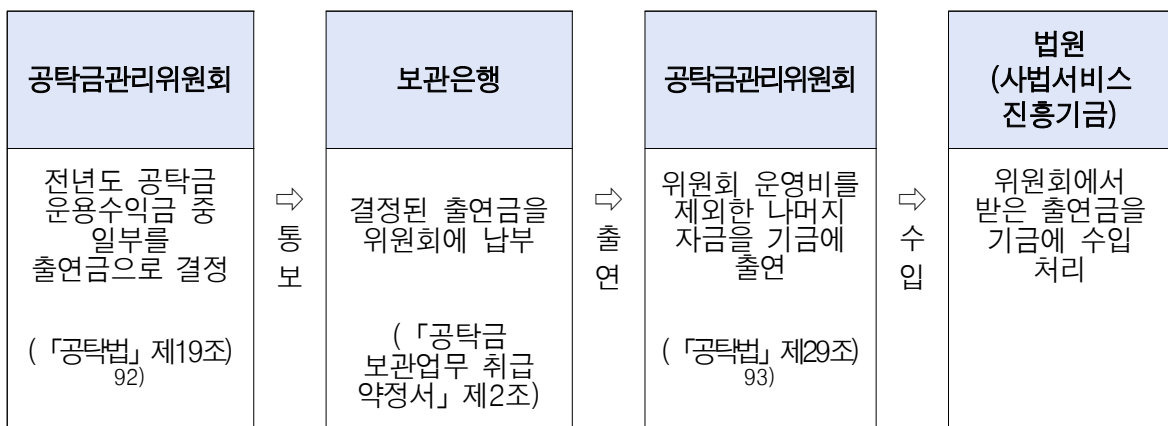
- 대법원은 시중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공탁금을 보관 하도록 하고, 보관은행은 보관된 공탁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 형식으로 출연하고 있음.⁹¹⁾

91) 공탁금 운용수익 발생 흐름도



민간출연금의 수입 절차는, 「공탁법」 제19조 등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의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결정하고, 보관은행이 동 위원회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에 출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민간출연금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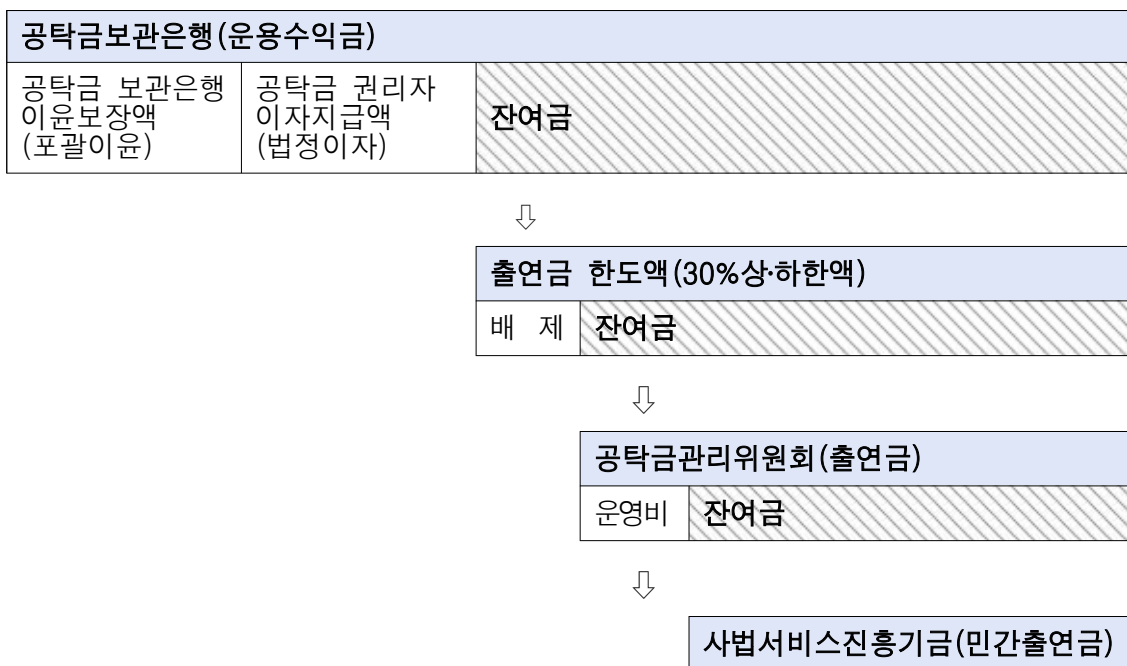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2022. 8.

- 92) 「공탁법」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93) 「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이때 민간출연금 규모는 은행의 공탁금 운용 수익금에서 은행에게 보장하는 특정 이윤(포괄이윤), 공탁금 반환 시 공탁금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탁금 이자(법정이자)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경비 등을 제외하여 확정됨.⁹⁴⁾

〈민간출연금 확정 절차〉



- 9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공탁금의 연평균 납입액은 9.65조원, 지급액은 9.26조원으로 통상 납입액의 규모가 지급액 규모보다 크고, 공탁금의 연말잔액은 증가 추세로서, 2019년(8.83조) 대비 2023년(10.84조) 22.8%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공탁금 납입·지급액 및 연말 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납입액	8.47	9.78	10.09	10.49	9.42	9.65
지급액	8.55	8.55	8.90	10.42	9.89	9.26
연말 잔액	8.83	10.05	11.23	11.31	10.84	10.45

자료: 정현희,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4.

그 결과 2023년 기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중에서 민간출연금 비중은 73.7%로 민간출연금이 동 기금의 주된 재원임.

〈2023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중 민간출연금 비중〉

(단위: 백만원, %)

항목	민간출연금	여유자금회수	기타	계
수입액	100,894	3,920	32,075	136,889
비중	73.7	2.9	23.4	100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처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공탁금 보관으로 발생하는 민간출연금이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대법원은 기금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목적사업의 충실한 실시를 위하여

공탁금 보관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민간
출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23년 말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탁금
보관금의 70% 가량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개소, 2023년 말 기준)

은행	공탁금 평균 잔액	공탁금 관리금액 비율	공탁금 관리 법원 수
신한은행	7,436,982	68.11	42
농협은행	1,050,158	9.62	87
국민은행	533,699	4.89	2
우리은행	423,317	3.88	6
하나은행	200,666	1.84	6
경남은행	351,456	3.22	8
대구은행	327,124	3.00	3
부산은행	253,082	2.32	2
광주은행	225,477	2.07	8
전북은행	116,578	1.07	2
전체	10,918,543	100	166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현황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⁹⁵⁾에서 신규 지정의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따르는 반면⁹⁶⁾, 기존

95)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보관은행 지정) ① 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를 통한 재지정(신규 지정 후 매 5년마다 실시)⁹⁷⁾의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기존 보관은행을 재지정하므로,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방식〉

(단위: 백만원, 해당연도 12.31.자 기준)

연도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방식	은행 수	공탁금잔액
2019	공개경쟁(신규지정)	1	121,886
	수의계약(재지정)	7	1,584,609
2020	공개경쟁(신규지정)	2	252,869
	수의계약(재지정)	5	573,307
2021	공개경쟁(신규지정)	3	3,666,092
	수의계약(재지정)	2	1,378,269
2022	공개경쟁(신규지정)	1	1,207,282
	수의계약(재지정)	3	1,483,093
2023	공개경쟁(신규지정)	1	291,802
	수의계약(재지정)	4	510,925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및 정기적격성 심사의 기준을 살펴보면,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96)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보관은행 지정 방법) ① 보관은행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3조 단서에 따른 복수지정 대상은행이 한 곳인 경우
3. 시·군법원의 경우
4. 제11조의 지정 취소로 인한 재지정 시 공탁금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97)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i)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ii)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 능력, iii)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등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⁹⁸⁾, 출연금 규모 등 수익적 측면⁹⁹⁾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아, 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 결과〉

연도	권역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법원 ¹⁰⁰⁾			은행명	적격성 심사 결과
2019	대구, 부산, 울산, 창원지역	20	신규	1	신한	모두 적격
			재지정	19	신한, 농협, 우리, SC, 경남, 대구, 부산	
2020	광주, 전주, 제주지역	12	신규	2	신한, 농협	모두 적격
			재지정	10	신한, SC, 광주, 전북	
2021	서울, 의정부지역	19	신규	14	신한, 농협, 경남	모두 적격
			재지정	5	신한, 농협	
2022	인천, 수원, 춘천지역	10	신규	2	신한, 농협, 우리, 국민	모두 적격
			재지정	8	신한, 농협, 우리	
2023	대전, 청주지역	9	신규	2	신한	모두 적격
			재지정	7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자료: 대법원 제출

○ 실제 최근 3년간 보관은행별 공탁금평균잔액 대비 기금에 출연된

98)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8조(심사·평가 기준)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3.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4. 보관금·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다만, 정기적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의견
7. 기타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9)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유·보관하는 현금 등을 취급하는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에 따르면 금고 관리 업무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수익성, 예치금리 등 수입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100) 시·군 법원 제외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0.64%~1.06%, 2022년의 경우 0.40%~0.86%까지, 2023년의 경우 0.47%~1.08%까지의 편차를 보여 공탁금을 어느 보관은행에 예치하느냐에 따라 기금의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보관은행별 민간출연률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관 은행	2021			2022			2023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신한은행	6,778,960	63,674	<u>0.94%</u>	7,666,264	56,183	<u>0.73%</u>	8,076,038	73,410	0.91%
SC은행	507,324	4,013	0.79%	437,546	2,553	0.58%	111,211	1,163	<u>1.05%</u>
우리은행	353,628	3,468	<u>0.98%</u>	377,351	3,245	<u>0.86%</u>	453,264	4,218	0.93%
농협은행	467,318	3,367	0.72%	611,846	4,161	0.68%	967,608	9,541	<u>0.99%</u>
하나은행	160,443	1,730	<u>1.08%</u>	197,219	1,676	<u>0.85%</u>	200,945	2,178	<u>1.08%</u>
광주은행	159,545	1,241	0.78%	191,812	1,208	0.63%	229,353	1,570	0.68%
대구은행	283,036	2,392	0.85%	304,188	1,977	0.65%	337,052	2,570	0.76%
부산은행	169,249	1,517	0.90%	266,556	1,854	0.70%	279,091	2,410	0.86%
경남은행	269,881	2,286	0.85%	342,735	2,236	0.67%	366,074	3,344	0.91%
전북은행	48,786	314	0.64%	94,728	377	0.40%	105,073	490	0.47%
합계	9,198,170	84,002	0.91%	10,520,245	75,530	0.72%	11,125,709	100,894	0.91%

자료: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정기적격성 심사를 통한 재지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 심사 기준에 있어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¹⁾.

101)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2024년 2월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4년 4월 24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4년 11월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바, 향후 출연금 증대와 출연금 안정적 확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지 출》

(3) 소년보호 등 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은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63억 6,700만원이며 이 중 50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계획(현)액 63억 6,700만원 중 11억 8,400만원은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5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4,600만원이 불용(54.5%)되었음.

〈2023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소년보호 등 지원	6,367	6,367	—	6,367	5,074	—	1,293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1,184	1,184	—	1,184	538	—	646

(나)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 필요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소년보호사건¹⁰²⁾,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포함)¹⁰³⁾,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 포함)¹⁰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102)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7.“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8. (생략)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9. (생략)

1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8. (생략)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년법」 제12조¹⁰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¹⁰⁶⁾,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¹⁰⁷⁾ 및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¹⁰⁸⁾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및 집단상담, 문화체험 실시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3.~4. (생략)

- 105)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 1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108)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2조(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 ① 법원장·지원장은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판사(다음부터 이들을 모두 합하여 ‘판사’라고 한다)가 조사·심리를 할 때에 「소년법」 제12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교육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및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다음부터 ‘전문가의 진단 등’이라고 한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가의 진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 관할구역 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진단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한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40% 내외로 매년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 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019	1,184	474	40.1	710	59.9
	2020	1,267	570	45.1	697	54.9
	2021	1,184	497	42.1	687	57.9
	2022	1,194	454	38	740	62
	2023	1,184	508	42.9	676	57.1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의 부진은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및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등에서 전문가 진단 또는 의견 조회의 실시 비율이 낮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2023년을 기준으로 전문가 진단이 실시된 사업은 소년보호집행감독 사건은 총 18,179건 중 856건(4.7%), 아동보호집행감독은 총 사건 4,752건 중 693건(14.5%), 가정보호집행감독은 총 사건 12,656건 중 1,847건(14.6%)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소년보호집행감독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백만원, %)

사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년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 수	14,339	15,149	13,990	14,100	18,179
	전문가 진단 실시 건수	675	713	658	664	856
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2,311	2,477	3,949	4,737	4,752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337	631	576	691	693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561	690	854	535	371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81	100	124	78	54
가정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12,816	10,477	9,834	11,710	12,656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1,871	1,529	1,435	1,709	1,847
피해자보호명령집 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1,340	1,087	1,004	855	845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195	158	146	124	123

자료: 대법원 제출

- 법률에서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발달적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범죄 원인의 규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동 사업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요인을 분석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128억 6,400만원이며 이 중 122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계획(현)액 128억 6,400만원 중 17억 600만원은 국민참여 재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배정되었는바, 이 중 16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사법서비스 향상	13,129	12,832	33	12,864	12,287	24	553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1,682	24	1,706	1,611	24	71

(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¹⁰⁹⁾
-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¹¹⁰⁾ 피고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¹¹¹⁾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 중 배심원의 안전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¹¹²⁾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시행)

1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1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1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대상 사건 21,483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는 약 3.14%인 674건으로, 접수 사건 수 대비 실시율은 13.0%, 대상 사건 수 대비 실시율은 0.4%에 불과함.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대상 사건의 범위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되어¹¹³⁾ 대상 사건 수가 4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와 실시 건수는 대상 사건 수 증가폭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2012년 이후에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음.

〈국민참여재판 제도 실시 현황(2008년~2023년)〉

(단위: 건, %)

연도	대상 사건수	접수 건수	처리							기타 (미제 등)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제결정 (통상화부결정 포함)		신청 후 철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08	4,287	233	64	29.8	61	28.4	90	41.9%	215	18
2009	5,661	336	95	30.8	75	24.4	138	44.8%	308	46
2010	6,040	438	162	39.1	75	18.1	177	42.8%	414	70
2011	5,924	489	253	51.2	63	12.8	178	36.0%	494	65
2012	20,464	756	274	40.5	124	18.3	278	41.1%	676	145
2013	19,974	764	345	43.3	118	14.8	334	41.9%	797	112
2014	21,397	608	271	44.4	107	17.5	233	38.1%	611	109
2015	19,521	505	203	38.6	106	20.2	217	41.3%	526	88
2016	20,924	860	305	38.9	151	19.3	328	41.8%	784	164
2017	19,615	712	295	37.2	195	24.6	304	38.3%	794	82

113) 2012년 이전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 법원규칙에 위임하였으나, 2012년 법률개정(법률 제11155호, 2012년 7월 1일 시행)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함.

연도	대상 사건수	접수 건수	처리							기타 (미제 등)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제결정 (통상회부결정 포함)		신청 후 철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18	19,717	665	180	28.8	183	29.3	261	41.8%	624	123
2019	17,948	630	175	28.0	187	29.9	263	42.1%	625	128
2020	19,314	865	96	12.4	293	37.8	387	49.9%	776	217
2021	18,758	767	84	10.7	306	39.1	393	50.2%	783	201
2022	21,289	811	92	11.3	241	29.6	480	59.0%	813	199
2023	21,483	674	95	13.0	226	31.0	407	55.9%	728	145

주: 대상사건 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해 연도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의 건수를, 접수건수는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임.

자료: 대법원 제출

- 특히,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에 대하여 법원이 배제결정(법 제9조) 또는 통상회부결정(제11조)을 하여 참여재판이 실시되지 않은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29~39% 수준에 이름.

배제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제9조제1항제4호(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른 배제결정이 640건, 제11조(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함)¹¹⁴⁾에 따른 통상회부결정이 374건으로 전체 배제사유 중 8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현황〉

(단위: 건)

적용 법조 연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법 제9조제1 항제1호사유	법 제9조제1 항제2호사유	법 제9조제1 항제3호사유	법 제9조제1 항제4호사유	제11조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우려	공범인 공동 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 하지 않음	통상회부결정	
2019	0	5	45	102	35	187
2020	1	4	43	167	78	293
2021	2	4	44	188	68	306
2022	1	0	45	93	102	241
2023	1	9	45	80	91	226
합계	5	22	222	630	374	1,253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년의 서울서부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2022년의 대전지방법원 및 2023년의 제주지방법원 등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실적이 전혀 없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실시 비율은 법원별로 0%에서 63%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인용 현황〉

(단위: 건, %)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48	11	22.9
	서울동부지방법원	25	3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30	6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34	7	20.6
	서울서부지방법원	26	9	34.6
	의정부지방법원	32	7	21.9
	인천지방법원	66	18	27.3
	수원지방법원	82	24	29.3
	춘천지방법원	16	7	43.8
	대전지방법원	47	14	29.8
	청주지방법원	19	12	63.2
	대구지방법원	40	16	40.0
	부산지방법원	56	4	7.1
	울산지방법원	14	6	42.9
	창원지방법원	23	12	52.2
	광주지방법원	32	5	15.6
	전주지방법원	29	9	31.0
	제주지방법원	11	5	45.5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69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35	9	25.7
	서울남부지방법원	55	3	5.5
	서울북부지방법원	42	6	14.3
	서울서부지방법원	18	1	5.6
	의정부지방법원	68	1	1.5
	인천지방법원	59	8	13.6
	수원지방법원	126	14	11.1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춘천지방법원	16	5	31.3
	대전지방법원	67	3	4.5
	청주지방법원	41	10	24.4
	대구지방법원	67	17	25.4
	부산지방법원	54	6	11.1
	울산지방법원	27	4	14.8
	창원지방법원	41	6	14.6
	광주지방법원	39	0	0.0
	전주지방법원	25	0	0.0
	제주지방법원	16	1	6.3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74	14	18.9
	서울동부지방법원	31	7	22.6
	서울남부지방법원	34	9	26.5
	서울북부지방법원	24	6	25.0
	서울서부지방법원	17	0	0.0
	의정부지방법원	61	2	3.3
	인천지방법원	61	3	4.9
	수원지방법원	108	4	3.7
	춘천지방법원	14	3	21.4
	대전지방법원	49	1	2.0
	청주지방법원	22	6	27.3
	대구지방법원	63	17	27.0
	부산지방법원	57	1	1.8
	울산지방법원	20	4	20.0
	창원지방법원	36	1	2.8
	광주지방법원	45	6	13.3
	전주지방법원	30	0	0.0
	제주지방법원	21	0	0.0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45	4	8.9
	서울동부지방법원	25	3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41	6	14.6
	서울북부지방법원	39	7	17.9
	서울서부지방법원	17	3	17.6
	의정부지방법원	65	1	1.5
	인천지방법원	64	3	4.7
	수원지방법원	127	14	11.0
	춘천지방법원	13	4	30.8
	대전지방법원	53	0	0.0
	청주지방법원	33	6	18.2
	대구지방법원	72	15	20.8
	부산지방법원	67	6	9.0
	울산지방법원	16	1	6.3
	창원지방법원	46	14	30.4
	광주지방법원	43	2	4.7
	전주지방법원	28	2	7.1
	제주지방법원	17	1	5.9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44	5	11.4
	서울동부지방법원	9	1	11.1
	서울남부지방법원	31	4	12.9
	서울북부지방법원	37	8	21.6
	서울서부지방법원	18	4	22.2
	의정부지방법원	55	2	3.6
	인천지방법원	59	6	10.2
	수원지방법원	95	9	9.5
	춘천지방법원	15	3	20.0
	대전지방법원	41	2	4.9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청주지방법원	23	8	34.8
	대구지방법원	48	19	39.6
	부산지방법원	74	9	12.2
	울산지방법원	19	4	21.1
	창원지방법원	26	7	26.9
	광주지방법원	48	1	2.1
	전주지방법원	16	3	18.8
	제주지방법원	16	0	0.0

자료: 대법원 제출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신청주의 수정¹¹⁵⁾ 등에 따른 접수건수 확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각급 법원의 명확한 배제기준 마련 등을 통한 배제율 관리, 관할구역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5)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453호, 제2101783호)에는 신청주의에 대한 수정의 내용이 포함됨(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사유 중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한 재판이 저해된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등).

(다) 국민참여재판운영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대법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8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개 전략목표, 2개 프로그램 목표(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를 설정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에서는 ‘전체 사건 처리율’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대법원의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전략목표Ⅰ : 좋은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 Ⅰ-1 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재판활동 지원	①전체 사건 처리율 (%)	투입	(전체 처리사건수/ 전체 접수사건 수)×100	목표	100	100	100	100
				실적	99.3	100.2	100.1	99.5
				달성률 (%)	99.3	100.2	100.1	99.5
전략목표Ⅱ :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 Ⅱ-1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사법정보 화운영	①장애 복구 시간준수율 (%)	산출	서비스제공에 영 향이 있었던 장 애 처리 준수시 간 이내 장애처 리 건수 / 서비 스제공에 영향이 있었던 장애발생 건수) * 100(%)	목표	73	83	83	83
				실적	74	83	83	67.9
				달성률 (%)	101.4	100.0	100.0	81.8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4.

- 성과지표는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사건 처리율’만으로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이 어떤 목표로 어떤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재 대법원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및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개선 필요

- 2023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중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하여 4,900만원으로,
- 이 중에서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원이 이월(이월률 49%) 되었으며,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책연구비 (260-02)	25	25	24	49	24	24	24

- 최근 3년 동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해마다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계획액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1년	30	29	-	29	21.11.1. ~ 11. 11. (1차) 21.11.25 ~ 12. 6. (2차)	21.12. ~ 22.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 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형사정 책학회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2년	25	24	-	24	22.5.2.~ 5. 17. (1차) 22.5.30~ 6 14. (2차)	22.8.~ 23.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형사법 학회
23년	25	24	-	24 ¹¹⁶⁾	23.10.18 ~ 11. 7. (1차) 23.11.23 ~ 12.5. (2차)	23.12.~ 24.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기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계약기간은 모두 3/4분기, 4/4분기에 개시되었으므로, 이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체결 지연으로 보임.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72조¹¹⁷⁾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16) 2023년도에 이월된 24백만원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미집행상태임.

117)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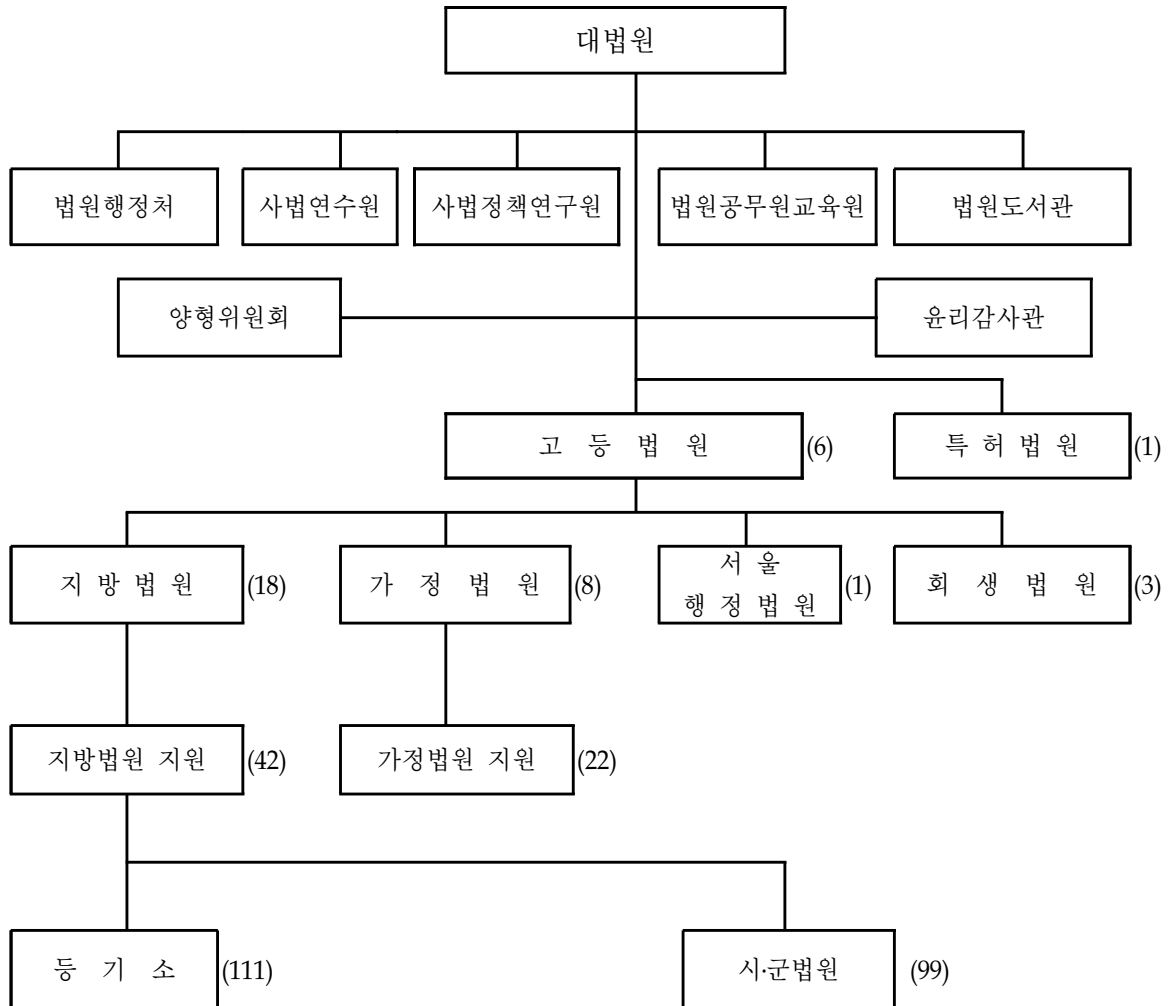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에서 이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 관련 과제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있거나 이월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은 향후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연구비 집행에 있어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1. 법원 조직도



※ 등기소는 광역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임.

※ 2024. 6. 30. 기준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가. 법 관

(2024. 5. 31. 기준)

구 분 직 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정 원 외 법 관
대 법 원	대법원장	1	1	－	
	대 법 관	13	13	－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2	2	－	
	재판연구관	100	99	－1	
고 등 법 원	원 장	7	7	－	사법연수원장 : 1
	부장판사	72	70	－2	사법연수원 교수 : 1
	판 사	298	289*	－9	사법연수원 교수 : 17
지 방 법 원	원 장	30	30	－	법원행정처 차장 : 1
	지 원 장	42	42	－	
	부장판사	1,267	1,223	－44	사법연수원 교수 : 10
	판 사	1,396	1,343	－53	
합 계		3,228	3,119	－109	정원 외 법관(30) 포함 법관총수 : 3,149

* 이 중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한 고법판사는 230명임
 ※ 2024년도 임용 법관 : 3명
 - 진담법관 3명
 ※ 2024년도 퇴직 법관 : 89명
 - 대법관 2명, 고법부장 4명, 지법부장 55명, 고법판사 15명, 판사 13명

나. 법원공무원

(2024. 5. 31.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경력직	일반직		13,600	14,424	458
특 수 경력직	정무직		3	2	-1
	별정직	연수생	2	-	-2
		비서관 등	34	27	-7
		법원보안 관리대원	-	66	66
일반직 또는 별정직			469	380	-89
임기제		일반임기제	366	366	366
		전문임기제	727	803	76
합 계			15,201	16,068	867

※ 특정직(법관, 연수원교수등), 청원경찰은 제외

※ 정무직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윤리감사관임

※ 청원경찰 : 정원 44명, 현원 43명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2022년 1월 ~ 2024년 5월, 단위: 건)

구 분	연도	2024년 5월			2023년			2022년		
	심급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 사 (본안)	접수	337,995	21,854	4,845 (4,845)	780,071	58,703	12,152 (12,150)	744,123	57,490	28,284 (11,667)
	처리	301,461	22,196	9,463 (5,687)	768,886	58,382	14,588 (12,381)	767,899	58,877	23,924 (12,008)
	미제	397,424	52,531	13,667 (3,433)	360,890	52,873	18,285 (4,275)	349,705	52,552	20,721 (4,506)
	상소	19,243	4,188	-	53,070	11,033	-	51,859	10,383	-
형 사 인원 수 (공판)	접수	95,996	30,025	9,378	236,981	79,453	21,102	219,908	71,167	19,179
	처리	88,587	30,870	9,887	230,927	74,489	20,419	223,504	70,036	19,432
	미제	127,657	47,063	4,152	120,248	47,908	4,661	114,194	42,944	3,978
	상소	40,148	9,921	-	104,099	22,301	-	92,602	20,048	-
가 사 (본안)	접수	16,651	1,645	261	40,002	3,972	701	41,966	4,239	705
	처리	15,243	1,652	345	40,517	4,240	701	42,326	3,907	706
	미제	26,451	2,651	99	25,043	2,658	183	25,558	2,926	183
	상소	1,158	203	-	2,887	549	-	3,112	548	-
행 정 (본안)	접수	8,800	2,599	1,451	21,953	7,184	3,526	21,906	7,226	4,126
	처리	8,494	2,588	1,643	21,295	6,874	3,677	22,020	7,559	4,172
	미제	18,020	5,510	1,111	17,714	5,499	1,303	17,056	5,189	1,454
	상소	2,506	1,272	-	6,959	3,383	-	6,822	3,978	-

주 : ()내의 수는 동일인에 의한 파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4.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및 조치 현황¹¹⁸⁾

일 시	시스템명	주요 장애발생내용	장애 발생원인	조치계획 및 결과
2022년 7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 제출 등 일부서비스 지연 발생	전자문서 오류로 인한 장애	정기적인 로그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2023년 3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 제출 등 일부서비스 제한 발생	회생법원 개원 작업에 따른 시스템 장애	개원 작업 완료 및 전산 시스템 중단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2023년 4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작성 문서 확인 기능 지연 발생	모바일 바코드 서버 윈도우에서 리눅스 변경 작업에 따른 장애	리눅스에서 윈도우OS로 회귀 후 업무 정상
2023년 6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 지연 발생	재판사무시스템 노후 DB lock으로 인한 접속지연 발생	서버 재기동을 통하여 해결재기동 이후 모니터링 철저히 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2023년 6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지연 발생	열람제한사건을 열람할 경우 접속 지연 발생	열람제한사건을 열람할 경우 열람제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수정
2023년 12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 제출 시 지연 발생	미성년자 소재기 시 공용 부전지 생성 기능 추가 반영으로 인한 장애	장애 발생한 소스 수정하여 재반영 후 정상
2024년 3월	전자소송 홈페이지	파일업로드솔루션(업그레이드 버전) PC 설치 오류 발생	파일업로드솔루션 업그레이드 버전 배포 후 사용자 PC 설치 오류 발생	파일업로드솔루션 원복 후 정상

118) 2022년 1월 ~ 2024년 6월

5.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가.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변 상	징 계	
25	1	—	26	—	26

* 합계는 중복 적용된 건수를 포함

* () 안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한 경우 이의 건수를 기재

나.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 중	시정 미이행	
21	11	—	32

다.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1) 시정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2년도 대법원의 이·전용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으로 이·전용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 2022년도 공공요금 집행 현황 및 단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하여 `24년 공공요금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한 편성으로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p>— 본부운영지원 (공공요금및제세) (`23) 14,646 → (`24) 16,187백만원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사법부 재판기능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선진화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케냐, 크로아티	제도개선	○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법관 스스로 연수주제와 연수국가를 선정하고 연수계획을 수립 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연수국가 선정 시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신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아, 튀르키예, 베트남, 페루 등을 방문한 사례가 확인되어,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해외법원의 건축’ 등과 같이 법관으로서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연수를 하거나, 연수주제와 관련 없는 국가를 방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대법원의 내규에 따르면, 연수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비용의 일부를 환수해야 하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법관에 대하여 환수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연임법관 해외 연수 방문지 중 튀르키예나 베트남, 케냐 등 국가가 포함된 사례와 관련하여 사법제도 선진화 및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향후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국가에 대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연수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용반환을 비롯한 벌칙을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한 연수 목적 불부합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 선정이나 연수내용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법관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40조에 따라 환수처리 하였음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안내 등 관리를 강화하고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시 환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0월 12일
○[지적사항] 법정언행컨설팅은 당해에 부임하는 초임 부장판사 및 희망 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법관들의 법정언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정언행컨설팅이 필요한 법관 중심으로 컨설팅이	제도개선	○ 법정언행컨설팅은 모든 법관들에게 자신의 법정언행을 객관화하여 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법관 스스로 자신의 법정언행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법정언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현재는 초임 부장판사를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바, 초임 부장판사 또한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법정언행을 객관화하여 볼 필요가 있음. 2023년에는 합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을 변경·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의 재판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합의부 배석판사들의 법정태도 등에 대한 컨설팅과 적정 규모의 지원 전체 법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과업으로 추가하였음. ○ 202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법관 연수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21일
○[지적사항] 최근 3년간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위탁·실시하였는데, 과거의 연구사례나 타부처의 유사사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용역을 지양하는 등 외부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규모를 축소하여 수행할 것	주의	○ 연구과제 특성상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거나 연구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합리적 예정가격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연구용역 시 축적된 데이터로 예정가격을 산출함으로써 원가계산용역 위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5일
○[지적사항] 동 사업을 통해 수강한 강의 목록을 보면, ‘명품 PPT 제작기법’이나 ‘식품과 건강’ 등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교양강좌와 관련된 것으로 재판의 전문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은 재판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교양	주의	○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 각급 법원에서 주제 선정시 재판 관련 전문지식 습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명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예시)와 기존 실시 현황 내역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음. 다만, 일부 주제가 전문재판 역량강화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배정시에 선정된 주제가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을 위한 강의는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 사업이나 기본경비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전문재판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주제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법원에 배부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집행할 예정임 ○ 전문재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강의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강의의 경우 수정 요청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5일
○ [지적사항]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법원사람들 문예상을 주관하는 공보관실에 문의결과 국회지적사항과 같이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2023년도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부 포상담당부서인 인사운영심의관실에 법령상 근거를 요청 후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향후 공보관실에서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가 올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대법원에서 2022년도 공무원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지연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로 1억 3,000만	시정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시행 - 공무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관련 업무처리 전례가 없어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고, 특정한 용도로 집행이 허락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행정문제로 발생한 금액과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정년퇴직한 공무원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시 퇴직급여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국 재무관들에게 공문 시행하였음 － 또한 23년, 24년 전국 회계직공무원 교육과정과 고등법원 단위 권역별 순회 교육을 활용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재차 교육 조치하였음 ○ 예산·회계 담당자 전문직위 확대 시행 － 각급 법원 및 국 설치 이상 지원에 예산·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24. 7. 1.자로 보직관리 시행 ○ 조치완료일 : 24년 7월 1일
○ [지적사항] 불용된 19억 3,200만원에 대한 당초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총 4개 사업 중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개발’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세 개 사업은 차년도 이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뒤이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응찰자가 없어 제도 이행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시스템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시 예산 규모 및 난이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과업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응찰 가능한 수준의 과업규모가 제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 대법원은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정보기술(IT)인력 품귀 현상으로 공공분야의 IT 인력이 수익성이 큰 민간분야로 대거 이동하여 공공분야에서의 개발자 부족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법원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예산규모와 사업의 난이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추계와 응찰 가능한 과업범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2022년도 건물매각대 예산액 13억 8,900만원, 수납액 6,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4.6%에 불과하고, 2021년도 수납률도 13.2%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함 ○수납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정확한 추계에 근거한 예산의 연례적 편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른 유찰 등의 이유로 당초 매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건물매각대 수납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매각 계획이 수립된 건물에 대해 연내 매각 및 세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건물매각대 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32.5%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수납액을 고려한 합리적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매각 계획이 수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연내 매각 및 세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건물매각대 (‘23) 1,389 → (‘24) 937백만원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420-03) 중 일부를 법원 일반 업무에 대한 상담센터인 법원사용자지원센터와 법원 직원들의 숙소인 관악재 건물에 대한 보수비로 지출하였음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용자지원센터, 관악재 등 등기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비용 지출에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현재 용도가 등기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 － 2022회계연도에 착오로 인해 일부(4건)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재배정 사실 확인 － 2023회계연도 중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재배정한 내역 없음 ○ 조치완료일 : 23년 3월 31일
○[지적사항]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의	주의	○ 법률구조단체 중 주요 수행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이 ‘19년(2,902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목표달성률이 2019년 117.4%에서 2022년 86.3%로 낮아짐 <table border="1"><thead><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2 목표치 산출근거</th></tr></thead><tbody><tr><td rowspan="3">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건)</td><td>목표</td><td>15,689</td><td>18,800</td><td>19,176</td><td>20,460</td><td>20,553</td><td rowspan="3">'22년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 목표치를 최근 3년('18년~'20년) 평균 실적치 16,893건에 약 21%를 가산한 20,460건을 '22년 목표치로 설정</td></tr><tr><td>실적</td><td>18,424</td><td>19,567</td><td>20,311</td><td>17,667</td><td>-</td></tr><tr><td>달성도</td><td>117.4</td><td>104.1</td><td>105.9</td><td>86.3</td><td>-</td></tr></tbody></table>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2 목표치 산출근거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건)	목표	15,689	18,800	19,176	20,460	20,553	'22년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 목표치를 최근 3년('18년~'20년) 평균 실적치 16,893건에 약 21%를 가산한 20,460건을 '22년 목표치로 설정	실적	18,424	19,567	20,311	17,667	-	달성도	117.4	104.1	105.9	86.3	-		백만원) 대비 '22년(2,675백만원) 감소하는 등 지원금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수행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3) 3,006 → ('24) 3,879백만원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2 목표치 산출근거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건)	목표	15,689	18,800	19,176	20,460	20,553	'22년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 목표치를 최근 3년('18년~'20년) 평균 실적치 16,893건에 약 21%를 가산한 20,460건을 '22년 목표치로 설정																								
	실적	18,424	19,567	20,311	17,667	-																									
	달성도	117.4	104.1	105.9	86.3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지적사항] 최근 5개년 동 세부사업의 국내여비(220-01목)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1,100만원 예산 전액이 불용됨 [연도별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연도</th><th>계획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thead><tbody><tr><td rowspan="5">국내여비 (220-01목)</td><td>2018</td><td>11</td><td>-</td><td>11</td></tr><tr><td>2019</td><td>11</td><td>-</td><td>11</td></tr><tr><td>2020</td><td>11</td><td>-</td><td>11</td></tr><tr><td>2021</td><td>11</td><td>-</td><td>11</td></tr><tr><td>2022</td><td>11</td><td>-</td><td>11</td></tr></tbody></table>		구분	연도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국내여비 (220-01목)	2018	11	-	11	2019	11	-	11	2020	11	-	11	2021	11	-	11	2022	11	-	11	주의	○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사, 시스템 개발사항 협의,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소요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구분	연도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국내여비 (220-01목)	2018	11	-	11																											
	2019	11	-	11																											
	2020	11	-	11																											
	2021	11	-	11																											
	2022	11	-	11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내여비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해소할 것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 개정(2020. 12. 8.) 이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2년이나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한 내에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여 2022년 ‘형사공탁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예산 전액(6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과업대가 산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함으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도 내에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사업 계획안 편성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지적사항]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개인별 지급잔액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없는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집행내역 역시 적절하지 않은 사용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재판활동지원비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집행잔액을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였음 － 부서활동경비의 집행 역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처를 보면 주류 등을 구입하거나 호텔 뷔페의 오찬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적절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의 개인활동경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통해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사문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주의	○ 개인활동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는 단순히 수사, 감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활동 및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행정(운영)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임 － 개인별 지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부서활동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임 －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절한 집행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임 ○ 특정업무경비(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매일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 고지 후 취소 또는 반납결의를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인 이메일 발송, 유선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업무경비 사용 시 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관활동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유사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지적사항] 사업대상이 주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대법원 판례상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률도 매년 20 ~ 30%에 불과함 — 2022년 법관에게 지원된 소송지원은 총 17건으로 전부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음 ○하반기에는 동 사업 예산을 책임보험 가입에 사용하였는데 최근 5년간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최대 3,7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8,500만원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향후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변경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3년에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 2023년 지원건수는 28건, 지원인원은 47명으로 2022년 대비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청구의 목적 또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주장하고 있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제·개정하여 지원 근거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하고자 하였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26일
○[지적사항]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은 행정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사례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 수료 후	제도개선	○ 사법부 특히 법원행정처의 업무 특성상 사법 정책과 제도 수립, 법률안 의견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 2025학년도 선발 시 조기 퇴직 가능성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6명 중 2명이 자격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퇴직하여 당초 목표로 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육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고, 학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퇴직 시 급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등 퇴직을 방지할 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 기타 학위과정에 비하여 교육기간이 3년간 이루어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타 부처 및 타 위탁교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기 퇴직 방지를 위하여 선발기준을 개정하거나 위탁교육기간을 조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개선·보완할 것		선발 기준에 포함시켜 선발할 예정이고, 위탁교육기간은 신청인원이나 과정에 대한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검토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21일
○[지적사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일자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대법원은 정산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 검증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주의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검증 미흡 등 개선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시 일자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2월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 작성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안내하여 추후 정산보고서 검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였음. ○ 조치완료일 : 24년 2월 29일
○[지적사항] 연도별 수납률이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로 인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적정한 추계에 의한 수입예산이 계상될 필요가 있음 ○공탁금 등은 국민의 재산을 임시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국고귀속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적절한 수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며, 공탁금 환급을 위한 노력과 함께 환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보관금 및 송달료잔액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라 보관금 및 송달료 수입의 감소를 예측하여 `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휴면 공탁금 카카오알림톡 시행 -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 국고귀속 예정 사건 및 우편송달 불능 사건에 대한 전자적 안내(카카오알림톡)를 시행하였음(23.6.1~23.12.31) - 총 약 45억원이 출급되었으며 향후에도 안내 대상사건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음 ○ 상속 공탁금 조회 서비스 시행 - 상속인이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 공탁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1640건의 상속 공탁내역이 조회되었음(~24.1), ○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 토지 수용시 절대적불확지 공탁을 축소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지적사항] 증명서 발급 중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2020년도 관서발급 비율은 62.45%인 반면, 온라인 발급비율은 37.55%로 올라	제도개선	○ 홍보 방안 마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인 발급비율이 낮은 상태이고, 2022년도는 관서발급 비율이 54.34%인데 비해 온라인발급 비율이 45.66%로 역시 온라인발급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타 2022년도 온라인 발급실적은 기본증명서가 전체 12,899,639건의 36.76%인 4,741,771건, 혼인관계증명서가 전체 6,983,529건의 29.17%인 2,036,772건, 입양관계증명서가 전체 533,888건의 13.54%인 72,263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전체 458,112건의 7.57%인 34,674건 등 온라인 발급실적이 관서발급실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POP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센터 등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 예정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홍보물 포스터 시안, 홍보 대상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비용 등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 진행 중 ○ 조치완료일 : 24년 3월 15일																									
○ [지적사항] 최근 4개년 변상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19년 18.4%, 2020년 26.1%, 2021년 18.4%, 2022년 15.6%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함 [변상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계획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수납률</th></tr><tr><td>2019</td><td>-</td><td>1,037</td><td>191</td><td>18.4</td></tr><tr><td>2020</td><td>-</td><td>1,398</td><td>366</td><td>26.1</td></tr><tr><td>2021</td><td>-</td><td>1,458</td><td>269</td><td>18.4</td></tr><tr><td>2022</td><td>-</td><td>1,653</td><td>258</td><td>15.6</td></tr></table> ○ 대법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일반회계(세입) 변상금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을 받았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변상금 수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19	-	1,037	191	18.4	2020	-	1,398	366	26.1	2021	-	1,458	269	18.4	2022	-	1,653	258	15.6	주의	○ 향후 소송구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 및 수납 발생 가능성, 최근 수납액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변상금 수입 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19	-	1,037	191	18.4																							
2020	-	1,398	366	26.1																							
2021	-	1,458	269	18.4																							
2022	-	1,653	258	15.6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법원보관금 납입금액 중 환급대상금액이 얼마인지, 환급대상금액 중 미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법원보관금 환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법원보관금 환급률] (단위: 원, %) <table><tr><th>연 도</th><th>납부액(A)</th><th>환급액(B)</th><th>비율 (B/A)</th></tr><tr><td>2018</td><td>9,818,635,369,245</td><td>185,379,339,358</td><td>1.89</td></tr><tr><td>2019</td><td>9,820,926,724,639</td><td>196,786,760,575</td><td>2.00</td></tr><tr><td>2020</td><td>11,262,038,794,547</td><td>187,224,368,421</td><td>1.66</td></tr><tr><td>2021</td><td>12,261,168,647,768</td><td>209,929,085,139</td><td>1.71</td></tr><tr><td>2022</td><td>9,387,846,333,755</td><td>140,504,314,788</td><td>1.50</td></tr></table>	연 도	납부액(A)	환급액(B)	비율 (B/A)	2018	9,818,635,369,245	185,379,339,358	1.89	2019	9,820,926,724,639	196,786,760,575	2.00	2020	11,262,038,794,547	187,224,368,421	1.66	2021	12,261,168,647,768	209,929,085,139	1.71	2022	9,387,846,333,755	140,504,314,788	1.50	제도개선	○ 법원보관금 환급률 제고 방안 - 법원보관금 환급 당사자에게 환급이 지연되거나 환급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년에 두 번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보관금종결등록과 환급명령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각급 법원으로 보관금종결등록과 환급명령을 처리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음 - 법원보관금은 계좌입금신청을 통하여 환급계좌등록을 할 수 있고, 환급계좌가 등록된 경우 환급 사유 발생 시 계좌입금을 통한 환급이 가능함 - 반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의 보관금 환급은 취급점이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있으나, 주소 이전 등으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계좌입금신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환급통지 미수령으로 인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법원보관금 잔액이 신속·간이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납부자가 법원보관금 납부시 법원보관금납부서에 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시행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1일
연 도	납부액(A)	환급액(B)	비율 (B/A)																							
2018	9,818,635,369,245	185,379,339,358	1.89																							
2019	9,820,926,724,639	196,786,760,575	2.00																							
2020	11,262,038,794,547	187,224,368,421	1.66																							
2021	12,261,168,647,768	209,929,085,139	1.71																							
2022	9,387,846,333,755	140,504,314,788	1.50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시정중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된 예산 대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80%(2020년), 4%(2021년), 10%(2022년)로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진술조력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건수는 정체되어있는 등 지원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통계 작성방식의 문제로 실제 지원 건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2022년도에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00여명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였는데, 이 중 다수가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진술조력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진술조력인 관련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술조력인 제도사업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진술조력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사업은 증인신문절차에 참석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의 선발·양성·배치·자격 관리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다만, 진술조력인 선정이 부진한 이유 중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증인이 진술조력인보다는 신뢰관계 있는 자(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진술조력인이 별도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됨 ○ 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증인지원관 연수 과정에 진술조력인 강사 섭외, 법관 커뮤니티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요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게시 및 전국 법원에 대한 공문 시행, 법원과 법무부에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힘써 왔음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진술조력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진술조력인 선정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까지 공판단계 진술조력인 선정건수를 취합하는 방식이 통일되어있지 않았으나, 관련 담당자에 대해 진술조력인 선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 ○ 안내 양식을 개선, 관련 리플렛을 배포, 재판장에 대한 적극 안내를 통해 피해자 아동·장애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충분한 조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지적사항] 증인지원실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지원에는 일반증인지원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의성지원의 경우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가 아예 없음 ○가정법원은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어 아동학대관련 증인지원실이 있어야 함에도 인천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증인지원실이 없어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한정된 청사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전국 법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실 설치 여부에 대한 계획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향후에도 일반 증인지원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지적사항] 국선변호료 사업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변호료 단가가 낮은 실정임	제도개선	○ 2021년 12월까지 제1·2·3심 형사공판 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 일반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매건 각 400,000원이었음 ○ 그 후 2022. 1. 제1심·2심·3심 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보수기준을 45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외적으로 1회 공판기일 종결 사건 등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23. 1.부터 제1심·2심·3심 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보수기준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외적으로 1회 공판기일 종결 사건 등에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24. 1.부터 제1심·2심·3심 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보수기준을 5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외적으로 1회 공판기일 종결 사건 등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다만,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는 600~800만 원 수준으로 10여 년이 지나도록 인상되지 않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고, 일반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역시 현 법재판소 국선대리인(사건당 60만 원)보다 낮으므로 추가 증액이 필요함 ○ 위와 같은 보수 현실화는 국회의 예산 증액 없이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향후 국회에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5년 1월
○[지적사항] 유휴 등기소인 구)전주등기소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9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 ○유휴 등기소의 방치로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효율화된 유휴 등기소가 지역 사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구)울산중부등기소 활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제도개선	○ 유휴 등기소는 각 지방법원 등에서 활용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등기소에 대하여는 2020. 4. 위탁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시 및 구청 등으로부터 매입의사(교환)등이 확인되어 적정 여부 및 매각 절차를 각 검토하는 등, 활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구)울산중부등기소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하였으나 중단되었으며, 관사 취득을 위한 교환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등기소 신증축 및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미리 유헴 등기소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는 경우 조속히 매각할 예정임 ○ 향후 유헴가 예정되어 있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미리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유헴 등기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액이 16년간 100만원으로 동일함.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현실화 방안 - 소송구조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제도의 운용에 있어 소송구조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확대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의 인상을 통한 소송구조제도의 질적 향상은 양립이 어려운 면이 있음 - 또한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이 증액될 경우 변호사 수입 유인이 증가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추후 소송구조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본보수액의 감액 조정이 불가피해져서 감액 조정에 대한 반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대법원은 2019. 10. 예규 개정을 통하여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재량증액 범위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음 - 향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의 양상 및 예산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지속적 실시
○ [지적사항]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	제도개선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내 의결공익사업이 사업내용 및 집행주체에 따라 세분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의결공익사업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운영경비’와 같이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관련 기본경비 사업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기본경비성 지출이 상당수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 민원서비스 개선 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응시 제공’ 사업을 `24년 예산부터 본부 기본경비 내 운영비로 이관 편성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지적사항]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수는 1,051건으로 전체 사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역행함. 성과관리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사법참여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 중임 - 2022년과 2023년 전국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원·검찰·변호사·지역 언론 등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2020. 11)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내용 등을 담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추진(의안번호 2100453, 김종민 의원안) ○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야간 개정에 따른 심리 충실성 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 중임 ○ 국민참여재판 우수재판부 연수, 우수법원 선정·포상, 국선진담변호사 추가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 지속 시행 중 ○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매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홍보방안·홍보매체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지적사항] 다양한 국가의 선진 사법 이론 습득을 위해 영미권에 편중된 연수국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국외연수는 대부분 비학위과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해외 법률 지식 습득의 효과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위과정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장기국외연수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위과정 비중을 높이는 한편, 영미권에 편중된 연수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연수국가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확대 방안 - ‘법관 등 연수’ 제도는 선진사법이론 습득 및 해외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사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미권으로 편중된 장기국외연수가 비영미권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함 - 앞으로 영미국가로의 치중현상을 완화하고 ‘법관 등 연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비영미권국가로의 파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위과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연수자의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연구자료의 축적으로 사법부 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위과정은 비학위과정 보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국제사법 사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의 해외 사법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예산사정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여러 사정과 향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학위과정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지속적 실시
○[지적사항] 동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어져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예산편성체계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총사업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267억 3,200만원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09억 800만원이 회계와 기금에서 각각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예산편성 시 하나의 사업이 단일 회계 또는 기금에 계상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예산편성내역을 수정할 것	제도개선	○ 2022. 1. 28.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기금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고 20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속하여 협의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2024년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운영·유지보수에 해당하는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재원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2025년 중기사업계획서에는 이미 반영하여 제출함) ○ 조치예정일 : '24년 8월 31일
○[지적사항]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등기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은 1,213명에서 1,228명으로, 현원은 1,245명에서 1,257명으로 증가함 ○등기소 통폐합사업으로 등기소가 줄어들고, 등기업무 정보화사업으로 대부분의 민원서비스가 인터넷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남	제도개선	○법원은 각급 법원의 등기사건 접수건수 및 업무량 증감추이 검토, 적정건수 산출 등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개별 법원의 특수성 및 업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간 업무 편차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24. 1. 1.자 등기소의 적정인원을 검토하여 정원조정 완료하였음 ○또한, 등기소 통폐합, 광역등기국 개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업무분석과 정원감사 등을 통해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정원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지속적 추진
○[지적사항]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개경쟁방식보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의 경우 5개 은행이 수의계약, 1개 은행이 공개경쟁으로, 2022년의 경우 3개 은행이 수의계약, 1개 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계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민간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확대를 위하여 공탁금 지정은행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방식으로 변경할 것	제도개선	○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이 신설되거나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심의 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방 권역별로 1~2곳의 비교적 공탁금 잔고 규모가 큰 법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에 정책연구(수도권 복수은행 도입 여부 등) 의뢰 중이므로 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공개경쟁방식의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다만, 보관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탁금, 보관금, 송달료, 소송인지수납업무 등 법원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며, 시·군법원과 같이 공탁금 규모가 작아 수익이 나지 않는 법원의 공탁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